

2026년도 민생노동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제1장 2026년도 민생노동국 소관 예산안

I. 예산안의 주요 내용

1. 예산안 개요

가. 세입예산안 개요

- 2026년도 민생노동국 소관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470억 7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¹⁾(375억 6천 1백만원)보다 25.3%, 95억 1천 1백만원 증가된 것임.
 - 일반회계는 총 263억 8천 9백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세외수입 179억 3천만원, ▶보조금 78억 6천 8백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억 9천 1백만원이 포함된 것임.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총 115억 8천 3백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보조금 47억 1천만원, ▶지방채 62억 8천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억 9천 3백만원이 포함된 것임.

1) 동 검토보고의 2025년도(전년도) 최종예산은 '2026년도 예산안 제출시점(2025.10.31.)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임.

-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총 91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 보조금 91억원과 ▶ 세외수입 31만 6천원이 포함된 것임.

< 세입예산안 개요 >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2025 최종예산	2026 예산안	증감	
			증감액	증감률
총 계	37,561	47,072	9,511	25.3
일반회계	30,045	26,389	△3,656	△12.2
세외수입	13,658	17,930	4,273	31.3
경상적 세외수입	3,847	3,906	60	1.6
임시적 세외수입	6,756	11,054	4,298	63.6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78	264	△14	△5.0
지난연도 수입	2,777	2,706	△71	△2.6
보조금	9,782	7,868	△1,914	△19.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605	591	△6,015	△91.1
도시개발특별회계	4,200	11,583	7,383	175.8
보조금	1,800	4,710	2,910	161.7
지방채	2,400	6,280	3,880	161.7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593	593	(순증)
균형발전특별회계	3,316	9,100	5,785	174.5
세외수입	-	0.3	0.3	(순증)
보조금	3,316	9,100	5,784	174.5

- 일반회계 세입예산(263억 8천 9백만원)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세외수입(179억 3천만원) 중 ▶ ‘경상적 세외수입’ 은 재산임대수입(33억 9천 9백만원), 이자수입(3억 8천 2백만원) 등을 포함한 39억 6백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 은 보조금반환수입(92억 9천만원)과 기타수입(17억 6천 4백만원)을 포함한 110억 5천 4백만원,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은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1억 7천 7백만원)와 과징금(8천 7백만원)을 포함한 2억 6천 4백만원, ▶ ‘지난연도 수

입' 은 5개 부서의 전년도 이전 미수납액 27억 6백만원이 편성됨.

- '보조금' 은 ▶18개 내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9억 4천 4백만원과 ▶2개 내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3억 3천 6백만원, ▶6개 내역에 대해 정부의 기금으로부터 지원되는 수입 15억 8천 7백만원을 포함한 78억 6천 8백만원이 편성됨..

- 그밖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는 ▶전년도 이월금 5억 2천 8백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5천 2백만원, ▶보조금등 반환금 1천만원을 포함한 5억 9천 1백만원이 편성됨.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115억 8천 3백만원)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보조금' 47억 1천만원과 '지방채' 62억 8천만원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해 정부의 기금(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부터 지원받거나 차입하는 재원이 편성된 것이며, '보조금등 반환금' 은 2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결과에 따라 정부에 반납할 예정인 5억 9천 3백만원이 편성됨.

○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91억원)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보조금' 은 7개 내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91억원이 편성된 것이며, '세외수입' 은 토지개량제 공급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치구에 교부한 보조금의 사용잔액 31만 6천원이 편성됨.

< 세입예산안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2025 최종예산	2026 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세입내역
총 계	37,561	47,072	9,511 (25.3)	
일반회계	30,045	26,389	△3,656 (△12.2)	
세 외 수 입	13,658	17,930	4,273 (31.3)	
경 상 적 세 외 수 입	3,847	3,906	60 (1.6)	
재산임대수입	3,242	3,399	158 (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정책과> 노동자복지관 사용료 77 ◦ <상권활성화과> 서울품물시장 점포사용료 694 ◦ <농수산유통과> 마포농수산물시장 사용료 2,628
사 용 료 수 입	158	77	△81 (△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경제과> 서울소셜벤처허브 사용료 65 ◦ <농수산유통과>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입주기업 이용료 11
사 업 수 입	47	48	1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경제과> 함께누리몰 판매수수료 48
이 자 수 입	400	382	△18 (△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자 영농자금 융자금 이자수입 3 ◦ <5개 부서> 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등 정산 이자수입 3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정책과 9, 노동정책과 21, 상권활성화과 286, 공정경제과 13, 농수산유통과 47 ◦ <농업기술센터> 기타 이자수입 2
임 시 적 세 외 수 입	6,756	11,054	4,298 (63.6)	
보 조 금 반 환 수 입	5,776	9,290	3,514 (6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부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3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정책과 141, 상권활성화과 3,100, 공정경제과 72, 농수산유통과 84 ◦ <5개 부서> 자체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정책과 379, 노동정책과 124, 공정경제과 24, 농수산유통과 34, 농업기술센터 3 ◦ <5개 부서> 민간위탁금 등 정산 반환금 5,3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정책과 3,720, 노동정책과 424, 상권활성화과 575, 공정경제과 309, 농수산유통과 301
기 타 수 입	980	1,764	784 (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 부서> 기타 잡수입 1,7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정책과 1,623, 노동정책과 76, 상권활성화과 1, 공정경제과 49, 농수산유통과 4, 농업기술센터 4 ◦ <노동정책과> 노동자복지관 관리비 7
지 방 행 정 제 재 · 부 과 금	278	264	△14 (△5.0)	
과 징 금	81	87	6 (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유통과> 농안법 위반 과징금 87
과 태 료	197	177	△2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경제과> 할부거래법 위반 과태료 16 ◦ <공정경제과> 방문판매법 위반 과태료 82 ◦ <공정경제과> 가맹사업법 위반 과태료 79
지 난 연 도 수 입	2,777	2,706	△71 (△2.6)	
지 난 연 도 수 입	2,777	2,706	△71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 부서> 전년도 이전 미수납액 2,7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정책과 2,368, 노동정책과 12, 상권활성화과 194, 공정경제과 122, 농수산유통과 10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2025 최종예산	2026 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세입내역
일반회계	30,045	26,389	△3,656 (△12.2)	
보조금	9,782	7,868	△1,914 (△19.6)	
국고보조금등	9,782	7,868	△1,914 (△19.6)	
국고보조금	7,979	944	△7,035 (△8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정책과> 외식업 경쟁력 강화 패키지 50 ◦ <노동정책과> 지역 노사민정 협력 지원 13 ◦ <공정경제과>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461 ◦ <농수산유통과> 비료 가격 안정 지원 16 ◦ <농수산유통과> 양곡관리 18 ◦ <농수산유통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89 ◦ <농업기술센터> 농업 신기술 시범(도시농업 기술) 70 ◦ <농업기술센터>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지원 4 ◦ <농업기술센터> 농작물 병해충 방제 3 ◦ <농업기술센터> 농업 신기술 시범(친환경 기술) 65 ◦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5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7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2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안전교육 3 ◦ <농업기술센터>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25 ◦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 3 ◦ <농업기술센터> 치유농업 쉼터 조성 100 ◦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1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15	5,336	5,121 (2,38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경제과> 마을기업 육성 200 ◦ <공정경제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5,136
기금	1,587	1,587	- (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권활성화과>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 1,399 ◦ <농수산유통과>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140 ◦ <농수산유통과> 기본형 공익직불금 운영비 지원 3 ◦ <농수산유통과> 농지이용관리지원 45 ◦ <농수산유통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0.3 ◦ <농수산유통과> GAO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0.5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605	591	△6,015 (△91.1)	
보전수입등	6,605	591	△6,015 (△91.1)	
전년도 월금	765	528	△237 (△3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경제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26 ◦ <농업기술센터>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
융자금 수입	59	52	△7 (△11.3)	◦ <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자 영농자금 융자금 회수수입 52
보조금 반환	5,781	10	△5,771 (△99.8)	◦ <농업기술센터> 국고보조금 반환금 10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2025 최종예산	2026 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세입내역
도시개발특별회계	4,200	11,583	7,383 (175.8)	
보조금	1,800	4,710	2,910 (161.7)	
국고보조금등	1,800	4,710	2,910 (161.7)	
기금	1,800	4,710	2,910 (161.7)	◦ <농수산유통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4,710
지방채	2,400	6,280	3,880 (161.7)	
차입금	2,400	6,280	3,880 (161.7)	
정부자금채	2,400	6,280	3,880 (161.7)	◦ <농수산유통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6,28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593	593 (순증)	
보전수입등	-	593	593 (순증)	
보조금등 반환금	-	593	593 (순증)	◦ <농수산유통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 냉동창고 확충 지원 556 ◦ <농수산유통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상품화시설 확대 지원 37
균형발전특별회계	3,316	9,100	5,785 (174.5)	
세외수입	-	0.3	0.3 (순증)	
임시적 세외수입	-	0.3	0.3 (순증)	
보조금 반환수입	-	0.3	0.3 (순증)	◦ <농수산유통과> 토지개량제 공급 0.3
보조금	3,316	9,100	5,784 (174.5)	
국고보조금등	3,316	9,100	5,784 (174.5)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3,316	9,100	5,784 (174.5)	◦ <상권활성화과>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주차장 건립) 7,822 ◦ <상권활성화과>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이용보조) 234 ◦ <공정경제과>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935 ◦ <농수산유통과> 토지개량제 공급 20 ◦ <농업기술센터>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75 ◦ <농업기술센터> 예비농업인 기초영농기술 지원 9 ◦ <농업기술센터>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5

나. 세출예산안 개요

(1) 총괄

- 2026년도 민생노동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262억 7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2,575억 6천 3백만원)보다 12.1%, 312억 9천 2백만원이 감소된 것임.

< 세출예산안 개요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5 최종예산	2026 예산안	증감	
				증감액	증감률
총계	계	257,563	226,271	△31,292	△12.1
	행정운영경비	759	741	△18	△2.4
	재 무 활 동	57,913	22,113	△35,799	△61.8
	사 업 비	198,891	203,417	4,526	2.3
일반회계	계	240,751	181,917	△58,834	△24.4
	행정운영경비	759	741	△18	△2.4
	재 무 활 동	57,913	21,520	△36,392	△62.8
	사 업 비	182,079	159,656	△22,423	△12.3
도시개발 특별회계	계	12,302	31,072	18,770	152.6
	재 무 활 동	-	593	593	(순증)
	사 업 비	12,302	30,479	18,177	147.8
균형발전 특별회계	계	4,510	13,282	8,772	194.5
	사 업 비	4,510	13,282	8,772	194.5

- 일반회계는 전년도 최종예산(2,407억 5천 1백만원)보다 24.4%, 588억 3천 4백만원 감액된 1,819억 1천 7백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사업비 1,596억 5천 6백만원(전년도보다 12.3%, 224억 2천 3백만원 감액), ▶재무활동 215억 2천만원

(전년도보다 62.8%, 363억 9천 2백만원 감액), ▶ 행정운영경비 7억 4천 1백만원(전년도보다 2.4%, 1천 8백만원 감액)이 포함된 것임.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전년도 최종예산(123억 2백만원)보다 152.6%, 187억 7천 만원 증액된 310억 7천 2백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 사업비 304억 7천 9백 만원(전년도보다 147.8%, 181억 7천 7백만원 증액), ▶ 재무활동 5억 9천 3백만원(5억 9천 3백만원 순증)이 포함된 것임.
-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전년도 최종예산(45억 1천만원)보다 194.5%, 87억 7천 2백만원 증액된 132억 8천 2백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사업비 132억 8천 2백만원(전년도보다 194.5%, 87억 7천 2백만원 증액)만 포함된 것임.

(2) 사업별 분류(정책-단위-세부)

- 민생노동국의 사업구조는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24개, 세부사업 118개로 계층화되어 있으며, 정책사업별 주요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698억 3천 7백만원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318억 5천 9백만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287억 1천만원
-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62억 1천 6백만원
- 청년 골목창업 지원		18억 8천 6백만원
-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6억 2천 4백만원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136억 9천 3백만원
- 서울 광역 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85억 2백만원

- 서울시 공공배달 서비스 활성화 35억원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12억 1천 1백만원
- 소상공인 간편결제 활성화 지원 3억 8천만원
- 외식업 경쟁력 강화 패키지 1억원

【노동존중문화 정착】 249억 8천 4백만원

-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신축 83억원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56억 4천 4백만원
-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54억 9천 8백만원
-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15억 7천만원
-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운영 11억 9백만원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력제고】 440억 6천 6백만원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주차장 건립) 109억 5천 1백만원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전환사업) 100억 9천 1백만원
- 로컬 브랜드 상권 생태계 조성 57억 1천 9백만원
- 골목형 전통시장 건축혁신 41억 1백만원
-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촉진지원 26억 7천 5백만원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적가치 구현】 119억 7천 6백만원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63억 5천 6백만원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19억 2천 4백만원
- 서울소셜벤처허브 운영 16억 4천 8백만원
-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7억 9천 9백만원
- 개봉임대산업시설 관리 6억 6백만원

【공정한 거래질서 환경조성으로 소비자권의 보호】 39억 2천 8백만원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18억 7천만원
-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5억 5천 3백만원
-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 3억 6천 4백만원
- 공산품 안전관리 및 불법 공산품 단속 강화 3억 3천 7백만원
- 지방 물가의 안정적 관리 2억 6천 2백만원

【도시생활속 친환경 농수산물 유통환경 조성】 326억 8백만원

-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157억원
- 양곡도매시장 이전 64억 7천 9백만원
- 공영도매시장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 31억 9천 5백만원
- 가락시장 채소2동 비가림시설 설치 14억 8천 1백만원
- 서울 먹거리창업센터 운영 12억 2천 1백만원

【친환경 서울농업 육성】 29억 7천 6백만원

- 지속가능 시민농업 3억 8천 9백만원
- 함께하는 원예활동 교육 3억 5천 4백만원
- 치유농업센터 운영 2억 4천 8백만원
- 친환경농업 활성화 2억 2천 8백만원
- 농업기술센터 운영 및 유지보수 2억 1천 3백만원

(3) 성과계획서

- 민생노동국은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2026년도 성과계획서에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8개, 성과지표 13개를 설정하고, 2,262억 7천 1백만원을 편성함.

< 성과계획 총괄 >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민생노동국	1	8	13	24	226,271	199,900	26,371

< 성과계획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예산액	비중	
공정경제 기반마련과 상생협력 가치확산으로 활력 있는 서울 조성 (민생노동국)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소상공인 3년 생존율	83,530	41.06	
	소상공인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및 간편결제 활성화	서울사랑상품권 이용자 수			
	일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상생 복지 실현		노동환경 개선 컨설팅 참여 사업장 수	24,984	12.28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 수혜자 수		
	골목상권 활성화와 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로컬브랜드 상권 핵심점포 발굴 수	44,066	21.66
			전통시장 지원사업 상인 사업효과성 인식도(만족도)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통한 시민체감형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		소비자 상담결과 피해 구제율	15,904	7.82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경제기업 자생력 강화		서울소셜벤처허브 입주기업 매출액		
	도시농업 육성 및 농수산 유통 경쟁력 강화		반려동물 보급인원 수	31,957	15.71
			먹거리창업센터 보육기업 수(누적)		
양곡도매시장 이전 조성 사업 추진율					
서울농업 문화 확산 및 신기술 보급		차유농업 활성화 기반구축(누적)	2,976	1.46	
		대한민국 곤충경진대회			

(4) 성인지예산

- 민생노동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중 성인지예산은 총 10개 사업, 540억 9천 6백만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총 10개 사업, 501억 5천 6백만원)과 비교하면 사업 수는 동일하지만 예산규모는 39억 4천만원(7.9%) 증가된 것임.
- 성인지예산 사업(총 10개)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3개 사업(120억 4천 1백만원)은 성별영향평가사업, 3개 사업(22억 3백만원)은 자치단체특화사업, 4개 사업(398억 5천 3백만원)은 기타 사업으로 편성된 것임.

< 성인지예산 편성내역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6년도 본예산(안)		2025년도 본예산		증감	
	사업유형	예산액	사업유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계		54,096		50,156	3,940	7.9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운영	성별영향평가사업	898	※ 성인지예산 미지정		898	(순증)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성별영향평가사업	5,498	기타 사업	4,675	823	17.6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성별영향평가사업	5,644	성별영향평가사업	5,593	51	0.9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자치단체특화사업	1,924	자치단체특화사업	2,142	△218	△10.2
도시민 농업 기술 교육	자치단체특화사업	104	자치단체특화사업	96	8	8.0
농업 전문 인력 육성	자치단체특화사업	175	자치단체특화사업	167	8	5.0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기타 사업	31,859	기타 사업	25,554	6,305	24.7
청년 골목창업 지원	기타 사업	1,886	성별영향평가사업	2,798	△912	△32.6
로컬 브랜드 상권 생태계 조성	기타 사업	5,719	성별영향평가사업	7,728	△2,009	△26.0
지속가능 시민농업	기타 사업	389	성별영향평가사업	449	△59	△13.2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미편성		기타 사업	954	△954	△100.0

※ 성인지예산 사업의 유형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수립하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 성별영향평가사업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특화사업 :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이나 주력사업
 - 기타 사업 : 종전의 성별영향평가사업에 해당되거나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5) 기후예산

- 민생노동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중 기후예산은 총 5개 사업, 515억 2천 1백만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총 4개 사업, 214억 7천 6백만원)과 비교하면 1개 사업(25%), 300억 4천 5백만원(139.9%)이 증가된 것임.
- 사업유형별로는 기후예산 사업(총 5개) 중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신축(83억 원),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157억원), 양곡도매시장 이전(64억 7천 9백만원)을 포함한 3개 사업은 ‘혼합사업’ 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100억 9천 1백만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주차장 건립)(109억 5천 1백만원)을 포함한 2개 사업은 ‘배출사업’ 으로 분류하여 편성된 것임.

< 기후예산 편성내역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6년도 본예산(안)		2025년도 본예산		증감	
	사업유형	예산액	사업유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계		51,521		21,476	30,045	139.9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신축	혼합사업	8,300	※ 예산 미편성		8,300	(순증)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혼합사업	15,700	배출사업	6,000	9,700	161.7
양곡도매시장 이전	혼합사업	6,479	배출사업	554	5,925	1,069.5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배출사업	10,091	배출사업	12,122	△2,031	△16.8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 건립)	배출사업	10,951	배출사업	2,800	8,151	291.1

※ 기후예산 사업의 분류

- 감축사업 :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사업 이행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
- 배출사업 : 사업 이행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
- 혼합사업 : 배출·감축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사업
- 중립사업 : 온실가스 배출·감축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사업 혹은 정보부족 등으로 배출·감축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

2. 신규사업 및 완료사업

가. 신규사업

- 2026년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세부사업은 7개로,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촉진지원(26억 7천 5백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63억 5천 6백만원),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7억 9천 9백만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1억 2천 5백만원), ▶가락시장 채소2동 비가림시설 설치(14억 8천 1백만원), ▶치유농업공간 조성(2억원),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2천만원)에 총 116억 5천 6백만원이 편성됨.

< 신규사업 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부서명>	2026년도 예산안	신규편성 사유	사업별 설명서
합 계	(x5,796) 11,656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촉진지원 <상권활성화과>	2,675	○ 경영현대화 촉진을 위해 전문인력 배치를 지원 (공모,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된 162개소의 전통시장, 상점가 등을 지원)	204쪽 ~206쪽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공정경제과>	(x5,136) 6,356	○ 고용노동부 내시(2025. 9. 15.)에 따라 신규 편성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채용한 취약계층 근로자 임금 지원]	256쪽 ~258쪽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공정경제과>	(x461) 799	○ 고용노동부 내시(2025. 9. 15.)에 따라 신규 편성 [(예비)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사회적과를 화폐가치로 측정 후 인센티브 지급]	259쪽 ~261쪽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농수산유통과>	(x89) 125	○ 농림축산식품부 가내시(2025. 9. 15.)에 따라 신규 편성 (근골격계·심혈관질환 등 여성농업인 취약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358쪽 ~360쪽
가락시장 채소2동 비가림시설 설치 <농수산유통과>	1,481	○가락시장 채소2동의 본격 운영으로 인근 아파트단지에 불빛, 소음 관련 민원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비가림시설 설치를 지원	397쪽 ~400쪽
치유농업공간 조성 <농업기술센터>	(x100) 200	○ 농촌진흥청 가내시(2025. 9. 15.)에 따라 신규 편성 (도시민의 스트레스 완화 등을 위한 휴식공간 조성)	464쪽 ~466쪽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농업기술센터>	(x10) 20	○ 농촌진흥청 가내시(2025. 9. 15.)에 따라 신규 편성 (온열질환 예방요원을 선발하여 안전수칙을 교육하고 예방용품 배부하여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541쪽 ~543쪽

나. 폐지사업

- 2026년도에 폐지된 세부사업은 24개로, 2025년도에는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총 238억 9천 4백만원이 편성되어 추진되었으나 2026년도에는 ▶국고 보조사업 종료, ▶사업 간 통·폐합, ▶사업목적 기 달성, ▶단년도 사업, ▶사업효과성 부족 등을 사유로 소요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임.

< 폐지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부서명)	2025년도 최종예산	2026년도 예산 미편성 사유
합 계	(x7,157) 23,894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운영 <소상공인정책과>	767	○ 2026년도 야시장 개최지(광화문 세종로공원) 재정비 공사에 따른 사업중단
소상공인의 날 행사 <소상공인정책과>	150	○ 유사사업 통·폐합
서울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소상공인정책과>	(x6,919) 6,919	○ 자치구사랑상품권 자치구 예산으로 발행('26년 국비 미지원)
국고보조금 반환 <소상공인정책과>	5,765	○ 국고보조금 반환 미발생
노동자 종합 지원 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노동정책과>	954	○ 서울노동권익센터 통합 운영('25.10.~)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 <노동정책과>	82	○ 부서 사업 간 조정 (사무관리비는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 운영'에 편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노동존중 인식 개선'에 편성)
20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 <노동정책과>	(x76) 109	○ 고용노동부 국고보조사업 종료
2025년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 <노동정책과>	(x100) 199	○ 고용노동부 국고보조사업 종료
골목상권 행사 지원 <상권활성화과>	970	○ 골목상권 행사 지원사업 종료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 활성화 지원 <상권활성화과>	126	○ 전통시장 홍보 및 지원사업 홍보는 서울시 누리집 등 활용 가능하므로 미편성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부서명)	2025년도 최종예산	2026년도 예산 미편성 사유
전통시장 판로개척 지원 <상권활성화과>	200	○ 판로개척·특판전 사업에 대한 수요 감소 및 행사 이후 지속적인 매출증대 효과 미미하여 사업비 미편성
청년물 활성화 지원 <상권활성화과>	120	○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종료로 인한 사업비 미편성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주차장개보수) <상권활성화과>	(x7) 9	○ 중소벤처기업부 공모결과 반영(2026년도 중 개보수 지원 선정 시장 없음)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 체계 구축 <공정경제과>	451	○ 9년차 지원 종료(21개 자치구) 및 직영 전환(4개 자치구)에 따른 사업목적 달성
도심형 스마트팜 조성·운영 지원 <농수산유통과>	500	○ 단년도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미편성
서울 청년 밀키트 창업지원 <농수산유통과>	153	○ 단년도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미편성
공익직불제 이행 점검 <농수산유통과>	(x0.2) 0.2	○ 예산 규모가 소액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2026회계연도 중 간주처리 예정
(구)농업공화국 부지 매입 <농수산유통과>	5,748	○ 사업목적 달성(2025년~2025년 부지 매입 완료)
가락물 하늘공원 문화공간 조성 지원 <농수산유통과>	331	○ 사업목적 달성
가락시장 전기 재해 사전예방 AI 관리 시스템 운영 <농수산유통과>	62	○ 사업목적 달성
국고보조금 반환 <농수산유통과>	125	○ 국고보조금 반환 미발생
반려식물 교육 <농업기술센터>	9	○ 2026년도부터 '함께하는 원예활동 교육' 사업으로 통합 편성
농업·농촌 프로그램 현장 확산 기술 지원 <농업기술센터>	(x55) 110	○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 종료
농업인의 날 행사 <농업기술센터>	38	○ 격년제 사업

3. 주요 증액·감액 사업

가. 증액사업

- 2026년도 세출예산안 중 신규사업과 회계 간 이관사업을 제외하고 2025년도 본예산보다 15% 이상 증액편성된 세부사업은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신축(순증), ▶서울시 공공배달 서비스 활성화(순증), ▶양곡도매시장 이전(1,069.5%), ▶골목형 전통시장 건축혁신(423.8%), ▶마을기업 육성(303.3%) 등 25개임.

<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5% 이상 증액편성한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부서명)	2025 본예산	2026 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증액편성 사유	사업별 설명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소상공인정책과>	25,554	31,859	6,305 (24.7)	○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 지원규모 확대 - 중장년 디지털 전환 지원 (250명→300명),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1,300명→3,000명), 다시서기 프로젝트(500명→600명) ○ 자치구 소상공인 단체 지원 300백만원 편성 등	25쪽 ~30쪽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소상공인정책과>	14,120	28,710	14,590 (103.3)	○ 원활한 보증공급 및 기본재산의 건전성 유지를 위 해 증액	39쪽 ~42쪽
서울시 공공배달 서비스 활성화 <소상공인정책과>	-	3,500	3,500 (순증)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사업에서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 편성. ○ 자치구 공공배달 상품권페이백 및 홍보 추진, 흥 보 매체비 편성	71쪽 ~73쪽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노동정책과>	4,675	5,498	823 (17.6)	○ 도상·동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통합 운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등 반영 ○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등 일부 사업비 증액	89쪽 ~93쪽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운영 <노동정책과>	900	1,109	209 (23.3)	○ 인건비 인상률(3.5%) 및 호봉 승급분 등 반영 및 사업비, 운영비 일부 증액	100쪽 ~104쪽
노동존중 인식 개선 <노동정책과>	100	195	95 (94.5)	○ 언론홍보비 등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 예산 이관 ○ 사업주용 가이드라인 개발 비용 등 반영	105쪽 ~110쪽
서울시 촉탁직 노동자 후생복지 및 대체인력 지원 <노동정책과>	233	377	144 (62.1)	○ 일반휴양시설 이용료 등 지원 단가 인상 및 대체 인력 지원금 생활임금 인상을 반영 등	111쪽 ~114쪽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노동정책과>	1,216	1,570	354 (29.1)	○ 노동교육 및 노동절 기념행사 등 주요 사업 확대 에 따른 한국노총 지원예산 증액	126쪽 ~130쪽

※ 신규사업과 회계 간 이관사업은 제외한 것임.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부서명)	2025 본예산	2026 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증액편성 사유	사업별 설명서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신축 <노동정책과>	-	8,300	8,300 (순증)	○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신축 사업 추진상황에 따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대행사업비 반영	139쪽 ~143쪽
국 고 보 조 금 반 환 <노동정책과>	2	15	14 (715.6)	○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 예상액 반영	설명서 없음 ^{주1)}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 운영 및 고도화 <상권활성화과>	-	1,122	1,122 (순증)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에서 별도 세 부사업으로 분리 편성 ○ 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증액	157쪽 ~160쪽
골목형 전통시장 건축혁신 <상권활성화과>	783	4,101	3,318 (423.8)	○ 2025년도에는 설계비용을 반영하였으나, 2026년 도에는 공사추진을 위해 공사바감리비 등을 반영	192쪽 ~196쪽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주차장 건립) <상권활성화과>	(x2,000) 2,800	(x7,822) 10,951	(x5,822) 8,151 (291.1)	○ 중기부 공모 결과 반영(길동복조리시장 주차장 건 립 신규 선정에 따라 국시비 8,151백만원 증액)	207쪽 ~210쪽
국 고 보 조 금 반 환 <상권활성화과>	-	103	103 (순증)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반환금 편성	설명서 없음 ^{주1)}
서울소셜벤처허브 운영 <공정경제과>	1,310	1,648	337 (25.7)	○ 2026년 소셜벤처허브 이전에 따라 기존 사용공간 의 원상복구 비용 및 이사비용 등 반영	235쪽 ~239쪽
사회적경제기업 관리 <공정경제과>	20	25	5 (25.0)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증가에 따른 심사위원 회 개최비용 증가, 자치구 담당자 교육비 편성 등	240쪽 ~243쪽
마을기업 육성 <공정경제과>	(x50) 75	(x200) 303	(x150) 228 (303.3)	○ 행정안전부 국비 내시규모 증가에 따른 국시비 증 액 편성	244쪽 ~247쪽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농수산유통과>	887	1,040	153 (17.2)	○ 2026년 사업 참여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 반영	319쪽 ~322쪽
시민 안심동행 반려식물 클리닉 설치·운영 <농수산유통과>	600	840	240 (40.0)	○ 개소수 확대(14개 자치구 → 18개 자치구)	327쪽 ~330쪽
양곡도매시장 이전 <농수산유통과>	554	6,479	5,925 (1,069.5)	○ 양곡도매시장 이전 공사 예정 공정률에 따른 예산 편성(60%)	408쪽 ~412쪽
가락동농수산물도매 시장 시설현대화 <농수산유통과>	(x1,800) 6,000	(x4,710) 15,700	(x2,910) 9,700 (161.7)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공정률에 따른 도매권 역 제2공구(채소1동, 수산동) 공사비 등 반영	413쪽 ~417쪽
국 고 보 조 금 반 환 <농수산유통과>	-	593	593 (순증)	○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 예상액 반영	설명서 없음 ^{주1)}
농업 신기술 시범 (도시농업 기술) <농업기술센터>	(x30) 60	(x70) 140	(x40) 80 (133.3)	○ 농촌진흥청 가내시(2025. 9. 15.)에 따른 증 액 편성	438쪽 ~441쪽
친환경농업 활성화 <농업기술센터>	106	228	121 (114.0)	○ ICP 장비 노후화(고장)로 인한 교체	471쪽 ~475쪽
국 고 보 조 금 반 환 <농업기술센터>	7	27	20 (289.9)	○ 2024년 농촌진흥청 및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사업 집행잔액 반납(농림축산식품부 23,350천 원, 농촌진흥청 3,202천원)	설명서 없음 ^{주1)}

※ 신규사업과 회계 간 이관사업은 제외한 것임.

주1) 국고보조금 반환은 '재무활동' 중 하나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는 재무활동의 경우 사업별설명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음.

나. 감액사업

- 2026년도 세출예산안 중 폐지사업과 회계 간 이관사업을 제외하고 2025년도 본예산보다 15% 이상 감액편성된 세부사업은 ▶프리랜서 경력관리 시스템 운영(△86.9%), ▶전통시장 행사 지원(△71.1%),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63.9%),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48.3%),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46.7%) 등 26개임.

<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5% 이상 감액편성한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부서명)	2025 본예산	2026 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감액편성 사유	사업별 설명서
청년 골목창업 지원 <소상공인정책과>	2,798	1,886	△912 (△32.6)	○ 프렙아카데미 공덕 캠퍼스 추가 조성 완료에 따른 감액	31쪽 ~34쪽
외식업 경쟁력 강화 패키지 <소상공인정책과>	(x80) 160	(x50) 100	(x△30) △60 (△37.5)	○ 서울시 공공배달 서비스 홍보 관련 국비 미 지원에 따라 예산 감소	60쪽 ~62쪽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소상공인정책과>	1,210	2,274	△1,063 (△46.7)	○ ‘공공배달 서비스 활성화’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	67쪽 ~70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소상공인정책과>	40,000	20,700	△19,300 (△48.3)	○ 용자계정 전출금(200억원) :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용자지원 규모 고려하여 편성 ○ 투자계정 전출금(7억원) : 2025년 조성된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의 연차별 투자계획 반영	74쪽 ~77쪽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 운영 <노동정책과>	1,577	206	△1,370 (△86.9)	○ 상용 SW, HW 구입 완료 및 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비용 감액	121쪽 ~125쪽
로컬 브랜드 상권 생태계 조성 <상권활성화과>	7,728	5,719	△2,009 (△26.0)	○ 로컬브랜드 강화 및 육성(2기) 상권 사업 종료로 인한 보조사업 대상지 감소(2025년도 9개소→2026년도 2개소)	147쪽 ~153쪽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상권활성화과>	2,200	795	△1,405 (△63.9)	○ 사업 대상 상권 수 축소	154쪽 ~156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전환 사업) <상권활성화과>	12,122	10,091	△2,031 (△16.8)	○ 본공모 기준으로 사업비 편성(추가공모 사업비는 미포함)	161쪽 ~165쪽
전통시장 안전취약시설물 보수 <상권활성화과>	565	285	△280 (△49.6)	○ 재난재해 대비 예비비 성격 예산으로 2개년 연속 40% 미만을 집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감액 편성	166쪽 ~169쪽
전통시장 육성 ^{주1)} <상권활성화과>	2,121	1,567	△554 (△26.1)	○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일부 종료(디지털 전통시장, 첫걸음기반조성 육성사업 종료)	170쪽 ~173쪽

※ 폐지사업과 회계 간 이관사업은 제외한 것임.

주1) 2025년도의 세부사업명은 ‘특성화시장 육성’임.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부서명)	2025 본예산	2026 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감액편성 사유	사업별 설명서
전통시장 행사 지원 <상권활성화과>	3,642	1,052	△2,590 (△71.1)	○ 아간·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량 조정	178쪽 ~182쪽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 이용보조) <상권활성화과>	(X292) 373	(X234) 298	(X△58) △74 (△19.9)	○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선정결과 반영(2025년 17개소 선정→2026년 15개소 선정)	211쪽 ~214쪽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 및 성과관리 <공정경제과>	76	18	△57 (△76.1)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홍보사업'과 통합 추진으로 홍보비 50,000천원 감액	221쪽 ~225쪽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공정경제과>	260	210	△50 (△19.3)	○ 소비자단체별 사업추진 실소요액(31,250천원→25,000천원)을 반영하여 50,000천원 감액	266쪽 ~270쪽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운영 <공정경제과>	269	225	△44 (△16.4)	○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 재개발 및 개인정보서비스 요금관리시스템 통합' 과업 종료 등	277쪽 ~282쪽
공산품 안전관리 및 불법 공산품 단속 강화 <공정경제과>	477	337	△140 (△29.4)	○ 위조상품 검사 신설(6회) 및 안전성 검사 축소(12회→6회)에 따른 실검사비 감소로 136,000천원 감액 ○ 서울시 보유매체를 활용한 홍보 추진으로 공산품 안전검사 사업 홍보비 4,000천원 감액	288쪽 ~291쪽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 <공정경제과>	582	364	△219 (△37.6)	○ '가맹사업 공정거래 홍보 및 교육'(240,000천원) 대신 '우수 상생 프랜차이즈 선정'(120,000천원)을 추진 ○ 2025년도 중 배달플랫폼 상생지수 개발 완료로 평가비용만 편성	296쪽 ~302쪽
서울 농업 인 농업기계 구매 지원 <농수산유통과>	50	30	△20 (△40.0)	○ 2023년부터 신청 농가수 감소 추세 고려하여 지원 규모 2024년 수준으로 조정	339쪽 ~342쪽
친환경쌀 공급차액 지원 <농수산유통과>	25	20	△5 (△20.0)	○ 친환경쌀 생산량 감소에 따른 물량 조정(2,500포→2,000포)	343쪽 ~346쪽
농지이용관리 지원 <농수산유통과>	(x62) 88	(x45) 64	(x△17) △24 (△27.5)	○ 2026년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가내시(2025. 9. 15.) 적용	368쪽 ~371쪽
비료 가격 안정 지원 <농수산유통과>	(x28) 46	(x16) 26	(x△12) △20 (△43.1)	○ 지원단가 감소(2025년 226천원/톤→2026년 100천원/톤) 및 예상배정물량 증가(2025년 410톤 → 2025년 527.58톤)	372쪽 ~375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농수산유통과>	(x1.3) 1.3	(x0.3) 0.3	(x△1) △1 (△74.6)	○ 농림축산식품부 가내시(2025. 9. 22.) 반영	380쪽 ~383쪽
마포농수산물시장 보수비 지원 <농수산유통과>	389	323	△66 (△17.0)	○ 마포구 수요조사 및 보수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보수비 지원물량 반영	388쪽 ~391쪽
신기술 실증 연구 <농업기술센터>	73	36	△37 (△50.6)	○ 스마트팜 노후시설 보수 완료 및 양액 보관용 시약 냉장고 구입 완료	430쪽 ~437쪽
전통 우리음식 및 생활 자원 교육 <농업기술센터>	26	21	△5 (△18.0)	○ 1인 가구 생활요리 교육 종료	516쪽 ~519쪽
광역반려식물병원 운영 <농업기술센터>	130	90	△40 (△30.7)	○ 자치구 클리닉센터 확대로 찾아가는 반려식물병원 운영 사업 종료 ○ 현미경 임차 종료, 환경제어시설 조성 완료 등	533쪽 ~537쪽

※ 폐지사업과 회계 간 이관사업은 제외한 것임.

II.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2026년 경제전망

- 2026년 세계경제성장률은 기관별로 2.7%~3.1%²⁾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세계경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가 지속됨에 따라 중국, 인도 등의 신흥국은 수출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는 미국의 관세 인상에 따른 영향과 선제적 수출 효과의 축소로 인해 수출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시장금리 하락과 확장적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증가하고, 건설투자의 부진 완화 등에 따른 내수 회복으로 국내 경제 성장률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원·달러 환율 상승과 글로벌 무역 갈등 확대의 가능성은 물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인구구조 및 주요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잠재 성장률 하락 등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따라 국내외 주요 경제기관은 2026년 한국 경제성장률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 1.8%, 기획재정부 1.9%, 한국은행 1.6%, 국회예산정책처 1.9%, OECD 2.2%, IMF 1.8%로 전망함.

< 주요 기관의 2026년 국내 성장률 전망 현황 >

(단위 : %)

한국개발연구원(KDI) (2025.11)	기획재정부 (2025.8월)	한국은행 (2025.8월)	국회예산정책처 (2025.9월)	OECD (2025.9월)	IMF (2025.10월)
1.8	1.9	1.6	1.9	2.2	1.8

2) IBRD : 2.7%, OECD : 2.9%, IMF : 3.1%.

- 한편 정부는 2026년 예산편성 시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을 기조로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강조하며 총 지출 규모를 전년대비 8.1%(54.7조) 증가한 728조원의 2026년도 예산안을 제출함.
- 또한 ▶AI 3강을 위한 대전환, ▶신산업·R&D 혁신, ▶통상현안대응·수출 지원, ▶에너지 전환·탄소중립, ▶글로벌 문화강국 조성, ▶지방거점성장, ▶저출생·고령화 대응, ▶촉촉한 사회안전매트, ▶민생·사회연대경제, ▶산재예방·취약노동자 보호, ▶재난 예측·예방·대응, ▶첨단국방, 한반도 평화 등의 중점 투자방향을 제시함.
- 그리고 서울시는 ‘동행·매력특별시 2.0’을 기조로 ▶기초 생활보장 강화, ▶민생경제 지원, ▶안전 인프라 확충을 최우선으로 하고, ▶미래산업 육성, ▶건강문화 확산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예산을 더해 전년도 대비 3조 3,915억원(7%)이 증액된 51조 5,060억원의 2026년도 예산안을 제출함.
- 이를 위해 ▶시민의 삶을 지키는 동행서울, ▶안심일상을 위한 안전서울, ▶건강하고 활력있는 매력서울을 중점투자분야로 설정하되,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채무 규모를 늘리지 않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자 함.

< 2026년도 예산안 중점투자분야 및 주요사업 >

구분	안정된 삶의 기반을 위한 동행서울	안심일상을 위한 안전서울	건강하고 활력있는 매력서울
분야별 예산규모	16조 6,686억원	4조 3,663억원	2조 617억원
주요사업	1.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 : 7조 575억원 2.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지원 : 7,452억원 3.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 : 1조 7,016억원 4.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 7조 1,642억원	1. 안전인프라 확충 : 2조 2,740억원 2. 대중교통 편의성 강화 : 2조 923억원	1. 365일 건강한 생활 : 8,919억원 2. 미래 성장동력 강화 : 2,675억원 3. 매일이 즐겁고 새로운 펀시티 조성 : 9,023억원

2.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가. 총괄

- 2026년도 민생노동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263억 8천 9백만원)와 도시개발특별회계(115억 8천 3백만원) 그리고 균형발전특별회계(91억원)을 포함하여 총 470억 7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375억 6천 1백만원)보다 25.3%, 95억 1천 1백만원 증가된 것임.

< 세입예산안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 최종예산	구성비	2026 예산안	구성비	증감		
					예산 증감액	예산 증감률	구성비 증감
전체 회계 합계	37,561	100.0	47,072	100.0	9,511	25.3	0.0
세외수입	13,658	36.4	17,930	38.1	4,272	31.3	1.7
보조금	14,898	39.7	21,678	46.1	6,780	45.5	6.4
지방채	2,400	6.4	6,280	13.3	3,880	161.7	7.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605	17.6	1,184	2.5	△5,421	△82.1	△15.1
일 반 회 계	30,045	80.0	26,389	56.1	△3,656	△12.2	△23.9
세외수입	13,658	36.4	17,930	38.1	4,273	31.3	1.7
보조금	9,782	26.0	7,868	16.7	△1,914	△19.6	△9.3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605	17.6	591	1.3	△6,015	△91.1	△16.3
도시개발특별회계	4,200	11.2	11,583	24.6	7,383	175.8	13.4
보조금	1,800	4.8	4,710	10.0	2,910	161.7	5.2
지방채	2,400	6.4	6,280	13.3	3,880	161.7	7.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0.0	593	1.3	593	(순증)	1.3
균형발전특별회계	3,316	8.8	9,100	19.3	5,785	174.5	10.5
세외수입	-	0.0	0.3	0.0	0.3	(순증)	-
보조금	3,316	8.8	9,100	19.3	5,784	174.5	10.5

- 세입과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전년도(136억 5천 8백만원)보다 31.3%, 42억 7천 2백만원 증가된 179억 3천만원, ▶보조금은 전년도(148억 9천 8백만원)보다 45.5%, 67억 8천만원 증가된 216억 7천 8백만원, ▶지방채는 전년도(24억원)보다 161.7%, 38억 8천만원 증가된 62억 8천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66억 5백만원)보다 82.1%, 54억 2천 1백만원 감소된 11억 8천 4백만원이 편성됨.

- 회계별로 구분하면
 - 일반회계는 총 263억 8천 9백만원(12.2%, 36억 5천 6백만원 감액)이 편성된 것으로, 이 중에는 ▶세외수입 179억 3천만원(31.3%, 42억 7천 3백만원 증액)과 ▶보조금 78억 6천 8백만원(19.6%, 19억 1천 4백만원 감액) 그리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억 9천 1백만원(91.1%, 60억 1천 5백만원 감액)이 포함된 것임.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총 115억 8천 3백만원(175.8%, 73억 8천 3백만원 증액)이 편성된 것으로, 이 중에는 ▶보조금 47억 1천만원(161.7%, 29억 1천만원 증액)과 ▶지방채 62억 8천만원(161.7%, 38억 8천만원 증액) 그리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억 9천 3백만원(순증)이 포함된 것임.

 - 균형발전특별회계는 ▶보조금(91억원)과 ▶세외수입(31만 6천원)을 포함하여 총 91억원(174.5%, 57억 8천 5백만원 증액)이 편성됨.

나. 국고보조금과 지방채의 확대 편성 관련

- 동일한 회계연도의 당초 본예산과 최종예산의 규모를 비교하면 최종예산의 규모가 큰 것이 일반적이며,³⁾ 불과 한 해 사이에 법령 개정이나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세입 여건이 확연히 달라지지 않는 이상, 당해연도 본 예산(당초예산)의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최종예산보다도 규모가 감소되는 경향이 있음.

< 전년도 최종예산과 당해연도 예산안 간 세입규모 비교 (예산안 기재내용 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 분	민생노동국 ^{주1)}				서울시 전체			
	전년도 최종예산 중 세입 규모	예산안 중 세입 규모	증감액	증감률	전년도 최종예산 중 세입 규모	예산안 중 세입 규모	증감액	증감률
2020년도 예산안	44,547	29,218	△15,329	△34.4	38,822,867	39,528,237	705,370	1.8
2021년도 예산안	36,923	23,650	△13,273	△36.0	45,004,840	40,047,933	△4,956,907	△11.0
2022년도 예산안	66,556	30,201	△36,355	△54.6	46,481,271	44,074,848	△2,406,423	△5.2
2023년도 예산안	113,825	105,056	△8,769	△7.7	52,223,345	47,205,228	△5,018,097	△9.6
2024년도 예산안	96,007	38,652	△57,355	△59.7	50,327,164	45,723,035	△4,604,128	△9.1
2025년도 예산안	40,705	29,872	△10,833	△26.6	47,360,877	48,040,683	679,806	1.4
2026년도 예산안	37,561	47,072	9,511	25.3	52,047,654	51,505,987	△541,667	△1.0

※ 주1)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예산안에는 ‘노동민생정책관’, 2023년도와 2024년도 예산안에는 ‘노동·공정·상생정책관’으로 반영되어 있음.

- 그러나 민생노동국 소관 2026년도 세입예산안(470억 7천 2백만원)은 2025년도 최종예산(375억 6천 1백만원)보다 25.3%, 95억 1천 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어 그간의 일반적인 사례와는 차이가 있음.
- 이는 2025년도 최종예산보다 국고보조금이 67억 8천만원(45.5%) 증액되고, 지방채도 2025년도 최종예산(24억원)보다 38억 8천만원(161.7%) 증액 편성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검토됨.

3) 이는 최종예산에는 추경예산이나 간주처리를 통해 증액되는 내역들(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잉여금, 회계연도 중 추가 교부되는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등)이 포함되기 때문임.

- 국고보조금을 증액편성한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일반회계의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과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에 고용노동부 가내시(2025. 9. 15.)를 반영하여 각각 51억 3천 6백만원, 4억 6천 1백만원이 신규 편성됨.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에 2025년도 최종예산(18억원)보다 29억 1천만원 증액된 47억 1천만원이 편성됨.
 -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주차장 건립)’ 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선정결과를 반영하여 2025년도 최종예산(20억원)보다 58억 2천 2백만원 증액된 78억 2천 2백만원이 편성됨.
- 지방채를 증액편성한 내역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1건으로, 2025년도 최종예산(24억원)보다 38억 8천만원 증액된 62억 8천만원이 편성된 것임.
- 목적과 용도가 지정된 재원인 국고보조금과 지방채는 해당 재원을 활용하여 추진하려는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인지, 즉 회계연도 중 재원의 교부·발행가능성과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편성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2025. 1.~2025. 9.)를 거친 후 총사업비 협의·조정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11월 현재까지 2025년도 예산에 기 편성한 국고보조금(18억원)이 서울시로 교부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방채(24억원) 역시 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2026년도 예산안에는 국고보조금과 지방채를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민생노동국은 총사업비 협의·조정절차가 완료되면 ‘가락동 농수산물도매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과 지방채를 본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협의·조정의 추진경과 및 결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재원(국고보조금, 지방채)의 조달시점이 지연되거나 조달규모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세입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세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 및 징수 강화 필요

- 「지방재정법」 제34조⁴⁾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7조⁵⁾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정운영에 있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이루도록 ‘수지균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예산총계주의의 원칙’과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입은 모두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하고 ▶세입예산만큼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예산보다 세입이 초과 발생되더라도 초과발생분이 세입·세출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상 실제 지출로 이어질 수는 없음.
- 따라서 세입예산안 편성 시에는 예산액의 규모를 정확히 추계하고,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는 예산편성된 세입이 체납되지 않고 적정 시점에 수

4)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3항 생략)

5) 「지방자치법」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납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지난 3년간 민생노동국의 세입결산 결과를 살펴보면 민생노동국이 회계연도 중 실제 징수결정하는 규모는 매년 예산액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비율도 2022회계연도에는 108.4%, 2023회계연도에는 104.1%, 2024회계연도에는 125.4%로 나타나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점차 저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아울러 민생노동국이 징수결정한 세입 중 미수납된 세입의 비율도 2022회계연도에는 2.1%, 2023회계연도에는 3.2%, 2024회계연도에는 7.4%로, 회계연도 중 실제 징수결정하고도 수납되지 못하는 세입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됨.

< 최근 3년간 서울시 전체와 민생노동국의 세입결산 결과 비교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①	징수 결정액 ②	징수결정액 비율 ②/①	실제 수납액	정리 보류액	미수납액 ③	미수납액 비율 ③/②
2022 회계연도	서울시 전체	53,468,799	56,822,399	106.3	55,571,682	114,645	1,136,071	2.0
	민생노동국	119,850	129,868	108.4	126,765	188	2,727	2.1
2023 회계연도	서울시 전체	51,490,048	52,245,294	101.5	50,758,554	293,169	1,193,571	2.3
	민생노동국	96,044	99,994	104.1	96,586	98	3,212	3.2
2024 회계연도	서울시 전체	49,104,950	50,634,481	103.1	49,252,886	139,988	1,241,606	2.5
	민생노동국	40,947	51,336	125.4	47,448	52	3,796	7.4

※ 민생노동국은 최근 3년간 세입결산시 전년도 이월액이 없어 예산현액이 예산액과 일치함.

- 2026년도 민생노동국의 세입예산안은 총 470억 7천 2백만원으로 서울시 전체 세입예산안(51조 5,059억 8천 7백만원)과 비교하면 0.09%에 불과하나, 재원의 한정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액이라 할지라도 누락 없이 예산 편성하고 징수될 수 있도록 주의가 요구됨.

-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는 세외수입 중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을 편성함에 있어 단순히 최근 수년간의 평균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편성하기보다는 전년도 시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확인하여 적정 규모로 편성하도록 권고된 바 있고, 해당 내용은 서울시의 예산편성기준에도 명시되어 있음.

<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추계 관련 결산검사 시정권고 및 서울시의 예산편성기준 >

-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의견서」, p.109
 나. 시정권고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목의 예산 편성시, 단순히 일반적인 세입예산 편성 방법으로 이를 추계할 것이 아니라, 해당 과목의 특성(자치구에 보조한 보조금 중 남은 금액을 반환받는다든 측면에서 반환 시기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고, 반환 가능성도 확보되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전년도 시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을 추계하여 이를 바탕으로 산정하되, 예산 편성의 일정 상(통상 각 실국은 전년도 6월 중순경 세입예산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반영되지 못한 기간의 사정은 추경시 이를 반영함으로써, 좀 더 적극적이고 면밀한 세입예산의 산정과 집행을 권고하는 바임.
- 서울특별시,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의견서」, p.35
 ※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시비보조금반환수입의 기계적 예산편성 지양】
 : 통상의 세입예산편성 방법(3년치 평균 등)이 아닌 전년도 시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추계 등을 통한 적정 규모 편성 권고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노동국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3억 9천 8백만원)을 편성함에 있어 최근 3년간의 평균 교부율 및 반환률을 적용하여 추계한 사례가 확인되는바,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산출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회계명	세입예산안 편성액	산출내역
합계		3,398	
노동정책과	일반회계	141	2025년 자치단체보조(2개 사업) 예산현액(교부율 100%) × 2022년~2024년 평균 반환률
상권활성화과	일반회계	3,100	2025년 자치구 보조사업 예산현액에 2022년~2024년 평균 교부율 및 반환률 적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회계명	세입예산안 편성액	산출내역
공정경제과	일반회계	72	2025년 자치단체보조금 예산현액 × 최근 3년(2022년~2024년) 간 교부율 × 최근 3년간 반환율
농수산유통과	일반회계	84	2025년도 예산현액 1,666,232천원에 최근 3년(2022년~2024년)의 연도별 예산 교부율, 반환율의 평균값 적용하여 산출

- 아울러 소상공인정책과가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 ‘지난연도 수입’으로 편성한 23억 6천 8백만원은 당초 2023년 12월 종전의 중소기업물류센터 무단점유에 대해 부과한 변상금(20억원)과 그에 대한 연체료(3억 6천 7백만원)로 확인되는바, 2026년도 중에는 반드시 수납될 수 있도록 징수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중소기업물류센터 무단점유 변상금 관련 현황 >

○ 추진경과

- 제1차~제4차 민간위탁단체 협약체결 및 운영('12.9.24~'23.12.31)
- 수탁기관의 반복적 협약 위반 및 부실 운영에 따른 협약 해지('23.2.28.)
- 수탁자의 위탁재산 인도 의무 미이행 및 무단점유('23.3.1.~'23.7.6.)
- 중소기업물류센터 위탁재산 인도 강제집행('23.7.6.)
- 무단점유 확정에 따른 변상금 부과('23.12.8.)

○ 변상금 부과개요

- 점유기간 : 2023. 3. 1. ~ 7. 6. (128일)
- 점유대상 : 舊중소기업물류센터 부지 4,444㎡ 및 시설 7,784㎡
- 부과금액 : 금2,000,792,180원(금이십억칠십구만이천일백팔십원) ※가산금 별도

○ 서울시 조치사항

- 변상금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23.10.20.~11.10.
- 변상금 확정 부과고지 : '23.12.8.
- 독촉고지 : (1차) '24.3.6. (2차) '25.4.24. (3차) '25.6.14.
- 체납고지 : (1차) '24.6.13. (2차) '25.6.26. (3차) '25.7.30. (4차) '25.8.29. (5차) '25.10.1.
- 재산조회 : (1차)'24.9.20. (2차)'25.6.12. ※ 결과 : 조합명의 재산 부존재

○ 향후계획

- 주기적인 체납고지 및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 발견시 압류 후 조치 예정
- 38세금징수와 고액체납 인수대상 이관을 통한 징수관리 전문성 강화

3.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가. 주요 특징

- 2026년도 민생노동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2,262억 7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2,575억 6천 3백만원)보다 12.1%, 312억 9천 2백만원이 감소된 것임.
- 서울시 전체 세출예산에서 민생노동국의 세출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26년도 예산안 기준 0.44%로, 2025년도 최종예산(0.50%)⁶⁾에 비해 0.6% 축소된 규모임.

< 세출예산 기준 서울시 전체에서 민생노동국이 차지하는 비중 >

(단위 : 백만원, %)

구분	서울시 전체 세출예산			민생노동국 소관 세출예산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2년도	당초예산	44,219,049	31,342,460	12,876,589	454,052	1.03	448,208	1.43	67,870	0.53
	최종예산	52,307,196	38,050,517	14,256,679	525,305	1.00	457,435	1.20	67,870	0.48
'23년도	당초예산	47,190,512	33,466,084	13,724,428	336,477	0.71	242,203	0.72	94,274	0.69
	최종예산	50,327,164	36,188,044	14,139,119	338,626	0.67	249,807	0.69	88,819	0.63
'24년도	당초예산	45,740,518	33,049,201	12,691,317	237,731	0.52	202,458	0.61	35,273	0.28
	최종예산	47,360,877	34,216,843	13,144,034	266,944	0.56	229,676	0.67	37,268	0.28
'25년도	당초예산	48,144,456	34,418,928	13,695,528	199,900	0.42	183,089	0.53	16,812	0.12
	최종예산	52,019,259	37,683,811	14,335,448	257,563	0.50	240,751	0.64	16,812	0.12
'26년도 예산안		51,505,987	36,894,301	14,611,685	226,271	0.44	181,917	0.49	44,354	0.30

6) 민생노동국은 2025년도 당초예산(본예산)을 기준으로는 서울시 전체 세출예산(48조 1,444억 5천 6백만원) 중 0.42%에 해당하는 1,999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기정예산 대비 285억원 증액),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기정예산 대비 70억 8천 8백만원 증액),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기정예산 대비 114억원 증액) 등을 확대하고, 정부의 제2회 추경 이후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교부한 국비(69억 1천 9백만원)를 2025년 10월 서울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운영에 간주처리함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 576억 6천 3백만원(28.8%)이 증가됨.

- 일반회계는 전년도 최종예산보다 0.15% 낮아졌고, 특별회계는 ▶ 당초 계획보다 공정이 지연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직전년도 최종예산보다 60억원 증액)뿐만 아니라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주차장 건립)’ (직전년도 최종예산보다 28억원 증액), ▶ ‘양곡도매시장 이전’ (직전년도 최종예산보다 5억 5천 4백만원 증액) 등을 증액 편성하면서 비중이 0.18% 증가됨.

<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예산 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 2025. 10. 31.기준)

구 분		2024년도 이월예산	2025년도 예산	예산현액	집행액		
					채소2동	채소1,수산	소계
합 계		5,854	6,000	11,854	223	15	238
공사비 시설 부대경비	건축,토목,조경비 등	5,152	-	5,152	223 ^{주1)}	-	223 ^{주1)}
	설계비	189	4,500	4,689	-	15 ^{주2)}	15 ^{주2)}
	감리비	507	1,200	1,707	-	-	-
	시설부대비	6	300	306	-	-	-
	소 계	702	6,000	6,702	-	15	15

※ 주1) 채소2동 하수도부담금(2억 2천 3백만원)을 집행한 것임.

주2) 채소1동 및 수산동의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1백만원)와 건축물 전과정 평가 및 소음측정 용역(1천 4백만원)에 집행한 것임.

나. 성과지표에 대해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 필요

- 성과계획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와 해당연도 정책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임.
- 2016년부터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위해 조직의 미션, 전략 목표, 성과 목표, 성과지표 등을 포함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됨.
- 정책사업목표는 그 목표의 달성 여부를 성과지표를 통해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성과지표는 정책사업목표를 대표하거나 포괄하고 사업의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구성되어야 함.⁷⁾

- 민생노동국의 2026년도 성과계획서를 전년도와 비교하면, 전략목표와 정책사업목표는 변동이 없으나, 성과지표 중 ▶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개소수’ 를 로컬브랜드 상권 핵심점포 발굴 수로 변경하고,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상담이용 만족도’ 를 ‘서울소셜벤처허브 입주기업 매출액’ 으로 변경하는 등 2개 성과지표가 변경되었음.

< 직전년도 대비 2026년도 성과지표 변경내역 >

2025년			2026년			변경내역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공정경제 기반마련과 상생협력 가치확산으로 활력 있는 서울 조성 (민생노동국)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소상공인 3년 생존율	공정경제 기반마련과 상생협력 가치확산으로 활력 있는 서울 조성 (민생노동국)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소상공인 3년 생존율	변동없음	
	소상공인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및 간편결제 활성화	서울사랑상품권 이용자 수		소상공인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및 간편결제 활성화	서울사랑상품권 이용자 수	변동없음	
	사각지대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	노동환경 개선 컨설팅 참여 사업장 수		일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상생복지 실현	노동환경 개선 컨설팅 참여 사업장 수	노동환경 개선 컨설팅 참여 사업장 수	변동없음
		서울형 임원 생활비 지원금 수혜자 수			서울형 임원 생활비 지원금 수혜자 수	변동없음	
지역상권 활성화와 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개소수	골목상권 활성화와 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로컬브랜드 상권 핵심 점포 발굴 수	변동		
		전통시장 지원사업 상인 사업 효과성 인식도(만족도)		전통시장 지원사업 상인 사업효과성 인식도(만족도)	변동없음		

2025년			2026년			변경내역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통한 시민체감형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	소비자 상담결과 피해 구제율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통한 시민체감형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	소비자 상담결과 피해 구제율	변동없음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 강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상담이용 만족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 강화	서울소셜벤처허브 입주 기업 매출액	변동
	도시농업 육성 및 농수산 유통 경쟁력 강화	반려식물 보급인원 수		도시농업 육성 및 농수산 유통 경쟁력 강화	반려식물 보급인원 수	변동없음
		먹거리창업센터 보육기업 수(누적)			먹거리창업센터 보육기업 수(누적)	변동없음
		양곡도매시장 이전 조성사업 추진율			양곡도매시장 이전 조성사업 추진율	변동없음
	서울농업 문화 확산 및 신기술 보급	치유농업 활성화 기반 구축(누적)		서울농업 문화 확산 및 신기술 보급	치유농업 활성화 기반 구축(누적)	변동없음
		대한민국 곤충경진대회			대한민국 곤충경진대회	변동없음

-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사업방식 개선의지 등 적극적 업무수행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하되,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민생노동국의 성과지표 중 ‘서울소셜벤처허브 입주기업 매출액’의 경우 2026년도 예산안을 통해 성과지표 2개가 변경됨에 따라 신규 도입된 지표로, 2025년도에는 성과지표에 해당되지 않았음에도 2026

년도 성과계획서에 전년도 목표(87억원)와 실적(상반기 기준 47억 7천 7백만원)을 기재한 것은 2026년도 성과계획서 검토 시 전년도의 수치를 비교·참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확인됨.

< 서울소셜벤처허브 입주기업 매출액 관련 성과계획서 작성내용 >

성과지표	2024년 목표	2024년 실적	2025년 목표	2025년 실적	2026년 목표
서울소셜벤처허브 입주기업 매출액(백만원)	-	-	8,700	4,777 (상반기)	8,800

- 다만 동 사업의 경우 2026년도 목표치를 88억원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사업별설명서(최근 3년 추진실적)를 살펴보면 이미 2023년도에 123억원, 2024년도에 86억원, 2025년 9월 기준 92억원의 매출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에 대한 개선의지를 반영하기보다는 충분히 달성가능한 수준에서 소극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한 사례로 판단됨.

< 서울소셜벤처허브 입주기업 매출액 관련 사업별설명서(최근 3년 추진실적) 작성내용 >

2023년도	○ 입주기업 지원 주요 성과 : 고용창출(126명), 매출액(123억원) , 투자유치(89억원)
2024년도	○ 입주기업 지원 주요 성과 : 고용창출(116명), 매출액(86억원) , 투자유치(67억원)
2025년도	○ 입주기업 지원 주요 성과('25.9월) : 고용창출(108명), 매출액(92억원) , 투자유치(20억)

※ 자료근거: 민생노동국, 「2026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p.239

- 그리고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 수혜자 수’는 2026년도 목표치를 5,615건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세부사업 중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6,000건을 기준으로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성과계획과 예산 편성이 연계되지 못한 사례로 판단됨.

< 성과지표 및 목표와 예산 편성이 괴리된 사례 >

성과지표	2024년 목표	2024년 실적	2025년 목표	2025년 실적	2026년 목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 수혜자 수(건)	5,094	5,348	5,348	3,996	5,615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산출근거 및 달성목표 >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 보조 749,000원*6,000건*103% = 4,628,820천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 보조 765,759원* <u>6,000건</u> = 4,594,554천원
	증감사유	
	○ 평균 지원단가 조정에 따른 감소(감34,266천원)	

최근 3년 추진실적
달성목표 : 2026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건수 6,000건

※ 자료근거: 민생노동국, 「2026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p.96~98

- 따라서 성과지표 중 ‘서울소셜벤처허브 입주기업 매출액’ 과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 수혜자 수’ 는 성과관리제도의 취지대로 성과와 예산을 연계시켜 재정 운영의 합리성·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서비스의 질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다. 성인지예산 사업 선정 및 관리에 있어 적정성 확보 필요

- 성인지예산제는 여성과 남성이 공평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임.⁸⁾

8)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지 예산제"란 여성과 남성이 공평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 민생노동국은 2026년도에 총 10개 사업을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선정하였는바, 그 내역을 전년도와 비교하면 ▶사업 자체가 폐지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을 제외하는 대신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운영’ 을 추가하였을 뿐 ▶그 외 9개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음.
- 다만 민생노동국 소관 성인지예산 사업(10개) 중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은 지난 2025년도 본예산 심사시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 성별과 무관하게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을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된 바 있음.⁹⁾
- 그리고 이후 민생노동국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제출한 성인지결산서에 동 사업은 남성이 사고 위험이 높은 직종에 근무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 여성수혜자의 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2025년도에는 성별 간 수혜자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전체 지원금 중 20%를 별도로 구분하고 이를 이동노동자 뿐만 아니라 여성종사자 비율이 높은 방문노동자까지 우선 지원하는 용도로 활용하겠다고 기재한 바 있음.

< 2024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중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관련 자체평가 내용 >

□ 자체 평가

- 결과에 대한 원인 : 본 사업은 질병·부상으로 인해 노동뿐만 아닌 생활에서의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생계 등으로 인해 치료 및 검진을 받지 못하는 취약 노동자와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입원 및 검진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여성 노동자가 경험하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여성집중직종(업종)과 유관한 ‘산재’, ‘업무 중 발생하는 질병·질환’ 등을 고려하여 ‘여성 수혜자 수’ 및 ‘입원 및 검진 지원에 대한 여성 수혜자 비율’을 성인지 예산의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관리해 왔으나, **여성에 비해 남성이 상대적으로 근로여건 상 사고 위험이 높은 환경(배달, 퀵서비스, 택배기사 등)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유병률 및 신청률에 있어 여성수혜자 비율이 남성수혜자 비율보다 다소 적은 상황임(‘24년 지원 비율 : 여성 47%, 남성 53%)**
- 결과에 대한 원인 : 2025년은 전체 지원금(46억원)의 20%를 우선 지원하는 대상을 기존 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9)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5년도 민생노동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자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2024. 11.), p.34

등 이등노동자에서 가사·청소·돌봄노동자, 과외·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로 확대하였음
향후, 지속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직무·직종 등을 분석하여 맞춤형 홍보 등을 통해 입원생활비
지원의 성별에 따른 수혜자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하겠음.

※ 자료근거: 2024회계연도 결산서의 첨부서류 중 '성인지결산서'

-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¹⁰⁾는 성인지 예산제에 대해 여성과 남성이 예산의 수혜를 '동등' 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공평' 하게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에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이 유병률·신청률 등과는 무관하게 단순 수치상으로 수혜자 수와 지출액 규모를 동일하게 조정하기 위해 예산 일부를 어느 한 성별을 위한 용도로 별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 따라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는 예산편성시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선정한 사실뿐만 아니라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있어서도 동 사업의 내용 및 성인지예산제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라. 기후예산제의 실효성 강화 필요

- 기후예산제는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며, 결산 시에는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평가·환류하기 위해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¹¹⁾

10) 당초 2020년 8월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발의 당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정의되어 있던 것을, 의회 심사과정에서 '공평'하게로 수정·가결된 것임(2020.12. 본회의 가결).

11)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하 "사업 등"이라 한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2026 회계연도 기후예산서(안)」, p.3

○ 기후예산제 개념

- 2021년 9월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¹²⁾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정부 차원에서는 관계 법률인 「국가재정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음.
- 반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등 관계 법률의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현시점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법률상 의무라고는 볼 수 없음.
- 그러나 서울시는 2021년 7월부터 자체계획¹³⁾에 따라 3개 실·본부·국에 대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를 시범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모두의 예산과 기금 전반에 걸쳐 기후예산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그리고 이러한 서울시의 기후예산제는 사업목적을 그대로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재정계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하기 위해 예산과 기금사업 중 당해연도 예산이 10억원 이상인 사업 등¹⁴⁾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감축영향에 따라 감축사업·배출사업·혼합사업·중립사

- 예산·기금이 투입되는 시정의 모든 사업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기금의 수립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감축방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

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3)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9956 (2021. 7. 16.)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시범 운영계획”

3. 2021년도 시범운영 계획

- 시범실시기관 :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현. 정원도시국), 물순환안전국

14) 기후예산제 대상사업

- 당해연도 예산이 10억원 이상인 사업
- 당해연도 예산이 10억원 미만인 사업 중
 -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다년도 추진사업, 직전회계연도 기후예산사업,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감축 사업

업으로 분류하여 기후예산서를 작성한 후 시의회에 제출하고 있음.

< 기후예산 사업분류별 정의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감축 :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사업 이행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② 배출 : 사업 이행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③ 혼합 : 배출과 감축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사업④ 중립 : 온실가스 배출·감축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사업 혹은 정보부족 등으로 배출·감축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 |
|--|

※ 자료근거: 서울특별시, 「2026 회계연도 기후예산서(안)」, p.4

- 민생노동국은 2026년도 기후예산서에 총 5개 사업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 바, 사업분류별로는 ▶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신축’,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양곡도매시장 이전’ 을 포함한 3개 사업은 혼합사업,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과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주차장 건립)’ 을 포함한 2개 사업은 배출사업으로 분류하였음.¹⁵⁾
- 대상사업별로 기후예산서 작성내용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은 사업공모를 추진하는 단계에서 친환경자재 등의 사용을 권고하는 것을 온실가스 감축방안으로 제시하고 있고,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주차장 건립)’ 은 조성하려는 주차면수(총 179면) 중 7면을 친환경차량 전용구획으로 확보하고 충전기를 설치함으로써 주차장 조성 이후 친환경차량이 이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과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주차장 건립)’ 의 경우 제시된 감축방안만으로는 구체적인 감축효과를 측정·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기후예산제 대상사업으로 설정한 실익이

15) 이는 직전년도의 기후예산서(총 4개 사업 포함)와 비교하면 '직전년도에는 배출사업으로 분류되었던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와 '양곡도매시장 이전'을 혼합사업으로 재분류하고, '직전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기후예산서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던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신축'을 2026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고 기후예산서에도 혼합사업으로 추가한 것임.

크지 않은 사례로 판단됨.

- 아울러 혼합사업으로 분류한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신축’ 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그리고 ‘양곡도매시장 이전’ 은 건물과 시설의 신축·재건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되지만,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화를 병행함으로써 감축효과도 가져오려는 것임.

< 민생노동국 소관 3개 혼합사업에 대한 감축량 산정방식 >

사업명	기후예산서 중 감축량 산정식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시설 면적(㎡) × 제로에너지건물 인증(ZEB 비주거용 5등급) 감축원단위 = 9,169.18㎡ × 0.006tCO₂/㎡ = 55.0tCO₂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시설 면적(㎡) × 제로에너지건물 인증(ZEB 비주거용 4등급) 감축원단위 = 150,326㎡ × 0.019tCO₂/㎡ = 2,856.19tCO₂ ※ 지열 9,710kW가 반영된 것임.
양 곡 도 매 시 장 이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시설 면적(㎡) × 제로에너지건물 인증(ZEB 비주거용 2등급) 감축원단위 = 9,521㎡ × 0.046tCO₂/㎡ = 437.97tCO₂

- 다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신축·재축·증축하는 경우 5등급 이상의 제로에너지건물로 인증받도록 의무화된 바 있음.
- 그리고 이후 관련 법령이 여러 차례 개정됨에 따라 인증대상이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신축·재축·전부개축·증축하려는 공공건축물이 ▶연면적 500㎡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5등급 이상의 인증을 받도록 하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포함한 연면적 1,000㎡ 이상의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4등급 이상의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관련 규정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 ②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 ④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을 말한다.
 1. 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등급. (단서 생략)
 2. 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제1호 본문에 따른 건축물 외의 건축물: 5등급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 건축물의 요건)

요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
1. 소유 또는 관리 주체	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교육감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범위	가. 건축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 나. 건축물을 전부 개축하는 경우 다.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3. 건축물의 범위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항 제1호의 인증 대상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
(제4호~제5호 생략)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일정 등급 이상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영 제12조제4항제1호 본문에서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7. 판매시설
 -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신축’ (5등급 인증),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4등급 인증)의 경우 법령에 따라 의무화된 최소한의 등급

으로 인증받는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온실가스 배출요인뿐만 아니라 감축요인도 존재하는 혼합사업으로 분류하면서도, 가스 배출을 추가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서울시가 기후예산제를 도입한 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라. 주요 사업 검토

(1)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별설명서 25쪽>

- 동 사업은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과 ‘자치구 소상공인 단체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해 318억 5천 9백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전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면 63억 5백만원(24.7%) 증가된 것이나 최종예산과 비교할 경우 7억 8천 3백만원(2.4%) 감액된 것임.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

2025년도		증감액 (증감률)		2026년도 예산안	산출내역
본예산	최종예산	본예산 대비	최종예산 대비		
25,554	32,641	6,305 (24.7)	△783 (△2.4)	31,8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2 ■ 사무관리비 1 ■ 국외업무여비 3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 ■ 특정업무경비 95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0 ■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1,360

- 동 사업에 편성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13억 6천만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대행을 통해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을 추진하려

는 것으로, 그 세부내역은 ▶소상공인 교육(1,100명), ▶현장멘토링(160명), ▶자영업클리닉(1,600명),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300명),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3,000명), ▶새 길 여는 폐업지원(4,000명), ▶다시서기 프로젝트(600명) 등으로 구성됨.

<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편성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증감	비고
합계	25,060	31,090	6,030	
소 상 공 인 교 육	113	120	7	○ 지원규모 확대 : 10,000명 → 11,000명 (1,000명 증가)
현 장 멘 토 링	129	129	-	○ 지원규모 동일 : 160명
자 영 업 클 리 닉	1,000	1,000	-	○ 지원규모 확대 : 1,000명 → 1,600명 (600명 증가) ○ 평균 지원횟수 조정 : 4회 → 2.5회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1,186	1,380	194	○ 지원규모 확대 : 250명 → 300명 (50명 증가)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	4,875	10,500	5,625	○ 지원규모 확대 : 1,300명 → 3,000명 (1,700명 증가, '25년도 추경 수준)
새 길 여 는 폐 업 지 원	14,000	14,000	-	○ 지원규모 동일 : 4,000명
다 시 서 기 프 로젝 트	1,250	1,500	250	○ 지원규모 확대 : 500명 → 600명 (100명 증가, '25년도 추경 수준)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 유지·관리	347	346	△0.1	
외부전문가 구성 및 운영	829	740	△89	
만 족 도 조 사	15	15	-	
온 · 오프 라인 홍 보	159	150	△9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 유지·관리	665	-	△665	○ 상권활성화과로 업무 이관
소상 공 인 힘보 탐 박 람회	-	600	600	
대행수수료 (사업비의 2%)	491	610	118	

-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면 ▶소상공인 교육(1,000명 증가), ▶자영업클리닉(600명 증가),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50명 증가),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1,700명 증가), ▶다시서기 프로젝트(100명 증가) 등이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있음.

- 특히 위기발생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에게 컨설팅 및 경영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 과 재기 의지 있는 성실 실패자에 대해 금융·비금융 종합지원을 추진하는 ‘다시서기 프로젝트’ 의 경우에는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전년도 추경예산과 동일한 지원규모를 계획하여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어 회계연도 개시 직후부터 위기 소상공인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편 동 사업에 편성된 자치단체경상보조금(3억원)은 서울시 자치구를 활동범위로 하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에게 ▶역량강화 교육, ▶특화사업 기획 및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연도별 자치구 소상공인 단체 지원 예산(자치단체경상보조금) 편성내역 >

(단위 : 백만원)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본예산	최종예산	본예산	최종예산 ^{주1)}	
350	750	-	330	300

※ 주1) 2025년 5월 제출된 「서울특별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 심사과정에서 3억원 증액조정 되어 의결(2025. 6. 27. 본회의 의결)된 것임.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사업 완료 후 다음연도 7월 말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그러나 동 사업은 2024년도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중 전년도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이는 서울시가 2024년도까지는 전년도에 추진된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나, 2025년 3월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당해연도 기준 폐지된 사업을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2025년도 본예산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미편성된 동 사업도 폐지사업으로 간주하여 성과평가를 미실시한 사안으로 파악됨.

2 평가대상		
구분	공공단체보조	민간보조
평가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치단체경상보조 ② 자치단체자본보조 ③ 사회보장적수혜금 ④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⑤ 지역대학에 대한 자본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민간경상사업보조 ② 민간자본사업보조 ③ 민간행사사업보조 ④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⑥ 사회복지사업보조
평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예비군육성지원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수업계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사업(매칭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매칭사업) • 평가 시행연도 기준 폐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사업수행상황 점검, 실적 보고 및 정산, 운용평가,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조치 등 · 기금 편성 지방보조사업도 사업별 성과평가 실시 		

※ 서울특별시,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2025. 3.), p.148

- 서울시는 폐지된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지침 개정을 통해 평가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나,¹⁶⁾ 기 추진된 지방보조사업이 설령 폐지되었다고 할지라도 재정을 투입한 결과를 정확히 평가하여 향후 동일한 사업이 재추진되거나 유사한 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이전의 평가결과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더욱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는 ▶당해연도 예산이 미편성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지 않으며 ▶평가 제외대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도 없음에도, 서울시가 임의로 평가 제외대상을 설정하는 것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예외를 두지 않고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제5항¹⁷⁾이 평가의 대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침 개정을 통해 평가 제외대상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일 수도 있으나, 해당 조례규정은 법률과 행정안전부 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평가시기나 평가방법(집중심의·일괄심)별로 대상을 설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됨.
- 따라서 향후 서울시는 평가 제외대상을 임의로 설정함으로써 기 추진된 지방보조사업에 투입된 행정적·재정적 비용이 이후 유용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그대로 매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16)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4392 (2025. 4. 3.) “2025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계획”

○ 평가 실익 제고 및 보조사업 관리 강화를 위하여 '25년 기준 폐지된 사업은 평가 제외, 상대평가 확대 실시

17)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성과평가)

⑤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2)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사업별설명서 39쪽>

- 서울시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매년 일정 금액을 출연하고 있음.¹⁸⁾
- 2026년에는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139억 1천만원(△32.6%)이 감액된 287억 1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신용보증재원 232억원, ▶보증료재원 55억 1천만원으로 구성됨.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2025년		2026년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본예산	최종예산			
14,120	42,620	28,710	△13,910	■ 출연금 28,710 - 신용보증재원 23,200 - 보증료재원 5,510

- 먼저 보증료재원 55억 1천만원은 동 재단이 보증을 제공하는 대가로 소상공인 등이 지급하는 수수료를 서울시가 출연금을 통해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2026년에는 희망동행자금 3,000억원, 신속드림자금 500억원, 다시서기 프로젝트 600명의 보증료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할 예정임.

< 보증료재원 세부 내역 >

구분	희망동행자금	신속드림자금	다시서기프로젝트
지원대상	경영애로기업 (대환대출용)	중저신용자, 저소득자,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성실실패기업, 성실 상환기업, 재창업기업
지원규모	3,000억원	500억원	600명

18) 재단은 공공의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보증을 지원하고 있어, 보증사고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출연이 담보되어야 함.

구분	희망동행자금	신속드림자금	다시서기프로젝트
지원방법	대출금리 중 일부를 서울시에서 지원	대출금리 중 일부를 서울시에서 지원	금융지원(대출보증, 보증료, 초기자금) 및 비금융지원(교육, 1:1 경영컨설팅)
지원조건	5년간 이차보전 1.8%	4년간 이차보전 1.8%	5년간 이차보전 2.5%
소요예산 (보증료재원)	44.2억원	8.5억원	2.4억원
산출근거	①3,000억원×1.0% (보증료)×3.4년(평균 상환주기) = 102억 ②기 출연금액 중 잔 여액 : 57.8억 ⇒추가 소요액 : 102 억-57.8억=44.2억	500억원×0.5%(보증 료)×3.4년(평균 상환 주기)=8.5억	1인당 최대 40만원× 600명 = 2.4억원

- 보증료 지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매출 감소 등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자 2021년부터 추진된 정책으로, 이를 통해 정책 대상자의 금융부담 완화에 기여했다고 평가됨.
-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보증료에 대한 자기부담의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지원대상 간 형평성 확보, 도덕적 해이 방지, 재단의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단계적으로 보증료 지원을 축소하고 한정된 재원을 신용보증 재원으로 전환하여 보증공급의 여력 자체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서울시는 2026년에 안정적 보증공급과 적정 운용배수를 유지하고자 신용보증 재원 23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재단은 총 3조 8천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고 운용배수를 9.6배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임.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및 운용배수 전망 >

(단위 : 억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예상)	2026년(예상)
보증공급액	31,349	31,366	34,500	38,000
보증잔액 (A)	97,313	80,859	77,500	76,000
연간 출연금 조성액	1,191	1,120	1,532	1,136
서울시	100	189	286	232
정 부	129	3	30	-
자치구	113	44	93	25
금융회사법정출연	120	138	181	129
금융회사 등 협약출연	729	746	942	750
당기순손실	1,512	2,052	1,841	1,43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3	-2	2	-10
기본재산(B)	9,477	8,547	8,236	7,946
운용배수(A/B)	10.3	9.5	9.4	9.6
▶ 연간 출연금 조성액은 서울시 출연금 중 “보증료 보전재원”을 제외한 신용보증채원임 ▶ 기본재산 = 전년도 기본재산+당해연도 출연금-당해연도 당기순손실-기타포괄손익누계액(순자산보정) ▶ 상기 내용은 업무계획 등에 기반한 예상 수치이며, 보증공급 및 부실 발생 추이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함				

- 한편 「지방재정법」 19) 및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20)에서는 출자·출연에 대한 예산안 편성에 앞서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안에는 소요예산과 산출근거를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지방의회가 본예산 심의에 앞서 출자·출연의 필요성과 재정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할 권한을 갖도록 법·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음.

19)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0)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의4(출자·출연 동의안) 시장이 제22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자·출연 사무명
2. 출자·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출자·출연 사무 내용
4. 출자·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이사회 회의록
7. 결산 보고서
8. 그 밖에 출자·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

- 그러나 서울시는 출연 동의안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본예산의 편성액 간에 매년 과도한 차이를 발생시켜 왔으며,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해왔음.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의 동의안-예산안 간 편차 >

(단위 : 억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동의안	예산안	편차	동의안	예산안	편차	동의안	예산안	편차	동의안	예산안	편차
630	574	△56	630	168	△462	463	228	△235	417	140.25	△276.75

- 이러한 지적은 시의회의 출연 동의안 심사를 형식적인 절차로 만들지 않고 의회의 사전 통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음.
- 그러나 지난 8월에 제출된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서도 서울시는 동 재단에 대한 출연금으로 1,555억원(보증료재원 105억원, 신용보증재원 1,450억원)을 제출하였으나, 2026년 예산안에서는 이보다 1,267억 9천만원(△81.5%)이 부족한 287억 1천만원만을 편성하였음.

< 2026년 출연 동의안-예산안 비교 >

구분	출연 동의안	예산안	비고
합 계	1,555억원	287억 1천만원	
보증료재원	105억원	55억 1천만원	- 희망동행자금 평균 상환주기 조정 (4.9년→3.4년) - 다시서기프로젝트 지원 금액 조정 (100만원→40만원)
신용보증재원	1,450억원	232억원	- 경기회복 기대에 따라 보증공급계획 하향(4조3천억원→3조8천억원) - 2025년말 출연금 조성액 상향 조정 (1,243억원→1,532억원) - 2026년 금융회사 협약출연금 상향 (500억원→750억원)

- 이는 서울시 주무부서(민생노동국)가 외부 출연금 확보 가능성이나 내부 재정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과도한 출연금 요구액을 동의안에 포함한 것으로, 시의회의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의 기능을 사실상 형해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서울시가 출연 동의안 제출과 본 예산 편성액 간 괴리가 발생한 사유로 제시한 내년도 경기회복 전망, 외부 출연금 확보 가능성 등은 출연 동의안 제출 시점에서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요인이므로, 운용배수 산정 과정에서 기타 요인들을 의도적으로 축소 평가하여 출연금을 과다 산정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임.

(3) 서울시 강북 노동자복지관 운영

〈사업별설명서 85쪽〉

- 동 사업은 노동자 복지시설 운영을 통해 서울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대비 1천 2백만원이 감액(△1.6%)된 7억 3천 4백만원이 편성됨.

< 서울시 강북 노동자복지관 운영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2025년 예산	2026년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746	734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운영비 2 ■ 민간위탁금 732

- 2002년 개관 이후 특정 노동단체가 전속적으로 사용하던 강북 노동자 복지관(이하 “복지관”)은 2023년 9월부터 ‘노동자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혁신방안(2023.7.)’ 에 따라 노동자와 시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으로 전환하여 운영(수탁기관: 재단법인 피플)하고 있음.

- 그러나 개편 이후에도 동 복지관의 프로그램은 주로 취미·여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노동자복지관 본래 기능과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적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더욱이 2026년 프로그램 또한 취약노동자 대상 교육이 단발성·일회성 위주로 운영되고, 직무능력개발·문화·건강 증진 프로그램은 전년과 유사하거나 취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적합성 문제에 대한 구체적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강북 노동자복지관 프로그램 변동 현황 >

구분	2025년	2026년
취약노동자 특화프로그램	-감정노동자 치유 프로그램	-감정·산재노동자 치유 프로그램, 소 규모사업장 노동자 퇴직연금교육(신설), 특고·프리랜서 세무교육(신설), 배달· 대리운전종사자 교통안전교육(신설), 기간제근로자 및 취업예정자 노동법 교육(신설)
노동자 직무능력개발 프로그램	-AI입문교육, AI에이전트교육, 발표력 향상 교육, 비즈니스 어학, 미디어영 상제작교육(개과정)	(좌동)
노동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필라테스&요가, 몸펴기생활운동, 서 플댄스, 탁구교실, <u>다이어트댄스(폐지)</u> , <u>산재예방포럼 및 세미나(폐지)</u>	-필라테스&요가, 몸펴기생활운동, 서 플댄스, 탁구교실, 단전호흡(신설)
노동자 문화활동 프로그램	-보컬레슨, 싱어송라이터 양성, 문인화, 캘리그래피, 노동자자녀와 함께하는 힐 링 프로그램, 노래교실(폐지)	-보컬레슨, 싱어송라이터 양성, 문인화, 캘리그래피, 노동자자녀와 함께하는 힐링 프로그램, 우크렐라 연주(신설)

- 아울러 노동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할 경우, 노동권익센터 사업과의 유사성 및 기능 중복을 피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므로 강북 노동자 복지관의 프로그램의 개선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강북 노동자복지관의 민간위탁금 중 인건비 비중은 61%로 높은 반면

사업비 비중은 14.2%로 실제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예산은 제한적이며, 이는 유사 기관인 서울 노동자복지관과의 비교에서도 확인되고 있음.

< 서울·강북 노동자복지관 2026년 민간위탁금 구성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서울 노동자복지관		강북 노동자복지관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민간위탁금	846	100.0	732	100.0
인건비	374	44.2	448	61.2
운영비	127	15.0	180	24.6
사업비	344	40.7	104	14.2

- 이와 같이 강북 노동자복지관이 프로그램보다는 인력 유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 효율성과 예산 활용 측면에서 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서울 노동자복지관, 노동권익센터 등과의 통합 또는 기능 전환을 통한 재구조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사업별설명서 135쪽>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²¹⁾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관할지역의 근로자·사용자·주민·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는 2011년 7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 동 사업은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²²⁾와

21)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2)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제4항²³⁾을 근거로 ▶ 협의회 사업비와 ▶ 협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3억 1천 3백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전년도(3억 1천 1백만원)와 비교하면 0.3%(100만원) 증액된 것임.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2025년도		증감액 (증감률)	2026년도 예산안	산출내역
	본예산	최종예산			
계	311	311	1 (0.3)	313	
민간경상사업보조	14	14	△3 (△20.3)	11	■ 협의회 사업비 11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298	298	4 (1.3)	302	■ 사무국 인건비 179 ■ 사무국 운영비 122

- 예산과목(통계목)별로 살펴보면 ▶ ‘민간경상사업보조’는 협의회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1천 1백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전년도(1천 4백만원)보다 20.3%(3백만원) 감액된 것이며,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사무국의 인건비(1억 7천 9백만원)와 운영비(1억 2천 2백만원)를 지원하기 위해 3억 2백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전년도(2억 9천 8백만원)보다 1.3%(4백만원) 증액된 것임.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²⁴⁾은 지방보조금을 편성할 경우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바,

23)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사무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2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조(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의 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업별로 편성하여야 한다.

동 사업도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 (1천 1백만원)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억 2백만원)가 편성되어 지난 9월 15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실이 있음.

- 다만 심의 당시 민생노동국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에 2억 9천 6백만원을 편성하려는 사안으로 심의를 요구하였고 위원회 심의결과 요구액(2억 9천 6백만원)보다 예산규모를 축소조정 하도록 ‘조건부 적정’ 으로 결정되었음에도, 2026년도 예산안에는 축소조정은커녕 확대조정하여 3억 2백만원을 편성함으로써 법정절차(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이행결과가 미반영된 사례임.
- 그러나 초과 편성된 규모 자체는 소액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심사결과 중 ‘조건부 적정’ 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서 적정하다는 의미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심의결과 중 ‘부적정’ 과 마찬가지로 볼 소지가 있음.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예산편성 전에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안에 대해 심의 자체는 형식적으로 거치되 그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법률의 규정취지와도 부합된다고 볼 수 없음.
- 더욱이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3년간 본협의회가 개최된 내역이 전무하고 ▶2026년도에는 노사민정 아카데미 횟수감소(4회→3회) 등으로 협의회의 사업비 자체는 감액편성 되었으며, ▶전체 소요예산 중 사무국 관련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만 확대(95.6%→96.5%)되고 있음에도, 사무국 현원(3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건비 상승분만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예산 구성내역 비교 >

(단위 : 천원, %)

구 분		2025년도 본예산		2026년도 본예산	
			구성비		구성비
총 계		311,433	100.0	312,515	100.0
협의회 사업비 (민간경상사업보조) 합계		13,800	4.4	11,000	3.5
협의회 운영비	본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1,800	0.6	1,800	0.6
	노사민정 아카데미	10,000	3.2	9,000	2.9
	노사민정 자료발간	2,000	0.6	200	0.1
사무국 인건비·운영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합계		297,643	95.6	301,515	96.5
사 무 국 인 건 비	국 비	171,817	55.2	179,285	57.4
사 무 국 운 영 비	소 계	125,826	40.4	122,230	39.1
	일반수용비(제세공과금 및 사무관리비) 등	1,000	0.3	14,330	4.6
	임차료 및 관리비	124,826	40.1	107,900	34.5

※ 사업별설명서 136쪽의 산출근거를 정리한 것임.

(5)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별설명서 154쪽>

- 동 사업은 골목상권을 구획하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홍보·마케팅 등 육성 활동을 통해 골목상권이 자생력을 갖춘 경제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4억 5백만원이 감액(△63.9%)된 7억 9천 5백만원이 편성됨.

<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2,200	795	△1,4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95

- 2025년 신규로 시작된 동 사업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대행하여 골목형 상점가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골목상권을 구획화하고 육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골목상권 77개소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60개소의 상권에 대한 홍보 프로그램을 추진함.

< 골목상권 구획화 지정 및 육성지원 사업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 2025. 1. ~ 12. ▶ 지원대상 : 골목형상점가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골목상권 및 골목형상점가 ▶ 수행주체 :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 ▶ 주요내용 :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 지원 : 상권조사, 홍보비, 단체 구성 행사, 단체 등록 등 - 육성 지원 : 상권방문 유도 행사, 온누리상품권 연계 할인 프로모션, 홍보 등 상권별 공동마케팅 ▶ 2025년 실적 : 77개소 지정(2025. 11. 12. 기준), 60개소 육성

- 법적·제도적 지원 범위의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제도적 지원 범위 내로 편입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동 사업의 취지는 인정됨.
- 다만 동 사업은 사업별설명서 및 계획서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등을 지원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는 개별 소상공인 경영 개선, 법적으로 지정된 상점가 지원, 국가의 소상공인 협업 지원 등에 관한 것으로 동 사업의 직접적 근거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골목상권 구획화 사업의 법적 근거 >

법령 또는 조례	조문 내용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3. 공동화 또는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7. (생략)
「소상공인기본법」	제19조(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① 정부는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 및 비용의 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협업 조직의 구성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소상공인 사이의 협업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소상공인 단체의 결성) ① 소상공인은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따라서 중장기 사업의 지속을 위해서는 조례상의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서울시는 동 사업을 시작할 때 향후 5년간 약 600개소의 골목형 상점가를 추가 지정한다는 중장기 계획을 제시하였으나²⁵⁾, 2026년도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목표를 당초 150개소에서 50개소로 축소하고 있음.
- 그러나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과 관련하여 2,000㎡ 내 소상공인 업소 30개 이상으로 규정된 밀집도 요건이 중소벤처기업부 권고²⁶⁾에 따라 15개 이상으로 완화되고 있으며, 서울시 일부 자치구²⁷⁾에서도 이를 반영하고 있음²⁸⁾.

25)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계획(2024. 11. 4.)

26)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완화 표준조례(안) 안내(중소벤처기업부, 2025. 3. 26.)

- 이러한 변화로 지정 가능 상권이 증가하고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단기적 예산 사정에 따라 목표를 축소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정책 대상을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6) **풍물시장 관리 및 운영**

〈사업별설명서 183쪽〉

- 동 사업은 ▶ 서울풍물시장(이하 “풍물시장”)을 2026년 1분기(1월~3월)의 3개월 동안은 민간위탁을 통해, 2분기부터 4분기까지(4월~12월)의 9개월 동안은 용역을 통해 관리·운영하고, ▶부지 사용료 및 공유재산 손해보험료 등을 납부하기 위한 것으로 총 25억 5천 6백만원이 편성됨.

〈 풍물시장 관리 및 운영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

2025년도		증감액 (증감률)	2026년도 예산안	산출내역
본예산	최종예산			
2,296	2,371	185 (7.8)	2,5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관리비 2,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부지사용료 납부 등 817 - 시장 운영 및 시설관리용역(2~4분기, 9개월) 1,301 ■ 공공운영비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 손해보험료 납부 4 ■ 민간위탁금 4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위탁비(1분기, 3개월) 434

※ ‘증감액’과 ‘증감률’은 직전년도 최종예산과 대비하여 산정한 것임.

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자치구청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8) (밀집도 요건) 2,000㎡ 내 소상공인 점포수

- 15개 : 광진, 금천, 구로, 도봉, 용산, 중구, 서초, 관악, 강동, 강남, 동대문
- 25개 : 강북, 서대문, 영등포, 노원(상업 외 지역)
- 30개 : 그 외

- 2008년 4월 개장한 품물시장²⁹⁾은 2025년 11월 현재까지 민간위탁을 통해서만 관리·운영되어 왔음.
- 그러나 그간 품물시장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민간위탁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었다고는 볼 수 없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다양한 문제점³⁰⁾이 지적되어 왔음.
- 그리고 서울시가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한 결과 3년 연속으로 활성화 효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³¹⁾ ▶주관부서(민생노동국 상권활성화과)가 2025년 5월 수립한 방침서인 ‘재위탁 추진계획’에도 상인의 자구노력 부족 등으로 인해 품물시장 활성화가 정체되어 있다는 내용이 적시됨.
- 뿐만 아니라 2025년 7월에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에서 ‘낮은 임대료로 인한 상인들의 소극적 운영 경향을 완화하고 자율적인 경영의지를 제고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서도 상당히 저조한 점수(75.02점)를 획득하였음.
- 한편 서울시는 당초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추진 중이던 민간위탁이 종료된 후에도 재위탁(2026. 1.~2028. 12.)을 통해 민간에 품물시장 관리·운영을 위탁할 계획으로 2025년 8월 의회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³²⁾을 제출하였으

29) 서울시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조성(2007. 12.~2014. 3.)을 추진하기 위해 2007년 10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신설동 소재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유 부지에 가설건축물을 신축한 후 동대문벼룩시장에서 영업활동을 하던 상인들을 이전하도록 하고 서울품물시장을 개장(2008. 4. 26.)하였음.

30)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시장규모 대비 관리·운영 인력과 조직(팀)이 과도하게 많다는 점, ▶전대 등 불법행위와 영업시간 중 미운영 점포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 ▶사용료·관리비 체납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징수가 필요하다는 점,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해 왔음.

31) 단 2025년도에 실시된 주요 재정사업 평가에서는 총 5단계의 평가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중 ‘보통’으로 결정되었음.

나, 의회는 그간 문제 제기되어 온 내용들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을 지속하기 보다는 용역을 통해 관리하거나 서울시가 직영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332회 임시회에서 해당 동의안을 부결(2025. 9. 9.)하였음.

- 그 결과 서울시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민간위탁이 종료(2025. 12. 31.)된 직후인 2026년 1월부터 신규 운영업체로 하여금 품물시장을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일정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9월 16일 기존 민간위탁의 추진기간을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에서 ‘2023년 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로 3개월(90일) 연장하기로 방침³²⁾을 수립하고, 10월 16일 수탁기관과 변경협약을 체결하였음.
- 그리고 그 후속조치로 서울시는 10월 18일 현재 추진 중인 민간위탁(2023. 1.~2026. 3.)이 종료되더라도 2028년 12월까지 민간위탁을 지속하기 위해 앞서 부결된 동의안과는 별도의 안건으로 동의안³⁴⁾을 다시 제출하였으며, 지난 10월 31일에는 ‘품물시장 관리 및 운영’ 사업(총 25억 5천 6백만원³⁵⁾)이 포함된 2026년도 예산안을 제출함.

< 10월 18일 제출된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 주요 내용 >

- 위탁사무명 : 서울품물시장 관리·운영
- 위탁유형 : 시설형 민간위탁
- 위탁사무 : 서울품물시장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전반
 - ▶ 시설물(부대시설, 비품·장비 포함) 유지 및 안전관리
 - ▶ 점포관리, 임대·차 계약, 관리비용 징수, 공유재산 사용료 납입고지서 교부 및 징수독려 등
 - ▶ 시장활성화 추진 종합대책 수립(점포재배치, 마케팅 홍보, 관광객유치 등)
 - ▶ 유통 및 상거래 질서의 확립 업무, 상인 입주 및 그 관련 사항
 - ▶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 ▶ 시장 주변의 환경 정비 및 관리
- 재위탁 예정기간 : 2026. 4. 1. ~ 2028. 12. 31.(2년 9개월)
 - ※ 동 동의안에는 민간위탁 예정기간이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으로 부정확하

32) 「서울품물시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1-3084, 제출자: 시장, 제출일자: 2025. 8. 11.)

33) 민생노동국 상권활성화과-11463 (2025. 9. 16.) “『서울품물시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사무 위탁기간 일시 연장 계획”

34) 「서울품물시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1-03336, 제출자: 시장, 제출일: 2025.10. 18)

35) 민간위탁 예산 4억 3천 4백만원이 포함된 것임.

게 기재되어 있으나, 현재 추진 중인 민간위탁 기간이 90일 연장되어 2026년 3월 31일 만료된다는 점에서 재위탁은 실제 2026년 4월 1일부터 2년 9개월간 추진될 예정으로 확인됨.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2026년도 민간위탁 예산^{주1)} : 17억 3천 5백만원
 - ※ 민간위탁 동의안의 민간위탁 예산(17억 3천 5백만원)은 2026년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가 반영된 것임
 - ※ 그러나 2026년도 예산안에는 1분기만 민간위탁 예산(4억 3천 4백만원)을 편성하는 대신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시장 관리·운영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위탁 예산과는 별도로 사무관리비(13억 100만원)가 편성된 것임.

(단위 : 천원)

구분	민간위탁 동의안 ①	2026년도 예산안 ②	차액 ②-①	비고
민간위탁 예산 합계	1,734,733	433,683	△1,301,050	2026년도 예산안 중 민간위탁금은 '재위탁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현재 추진 중인 민간위탁을 2026년 3월까지 시행하기 위한 경비를 반영한 것임(2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시장 관리·운영은 민간위탁이 아니라 용역을 통해 추진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13억 100만원을 별도 편성함).
민간위탁금	1,734,733	433,683	△1,301,050	
인건비	897,813	232,004	△665,809	
운영비	215,720	55,303	△160,417	
시설물 유지보수	241,200	53,550	△187,650	
사업부대경비	380,000	92,826	△287,174	
민간위탁사업비	-	-	-	

※ 주1) 수탁기관에 교부하지 않고 서울시가 직접 집행하게 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제외한 것임.

- 다만 두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동의안은 현재 추진 중인 민간위탁의 종료시점(2026. 3. 31.) 이후에도 2028년 12월까지 민간위탁을 지속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에는 12개월간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위탁 예산 17억 3천 5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 이에 반해 예산안은 2026년도 중 1분기(3개월)에만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2분기부터 4분기까지(9개월)는 민간위탁이 아닌 용역을 통해 동물시장을 관리·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민간위탁 예산 4억 3천 4백만원과는 별도로 사무관리비 13억 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따라서 같은 달(2025년 10월) 제출되어 같은 회기(제333회 정례회)에 심사되는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안 사이에 상호 모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서울시의 진의가 무엇인지 명확히 소명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서울시가 실제 추진하려는 내용이 민간위탁을 지속하려는 것이며, 그간 제기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개선의지를 신뢰하여 민간위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동의안을 의결할 경우에는 예산안 중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사무관리비(13억 1백만원)는 민간위탁금으로 예산과목이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7)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촉진지원

<사업별설명서 204쪽>

- 동 사업은 201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매력일자리(중전의 뉴딜일자리)로 운영되어 온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을 민생노동국(상권활성화과)이 독자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26억 7천 5백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임.

<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촉진지원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

2025년도		증감액 (증감률)	2026년도 예산안	산출내역
본예산	최종예산			
-	-	2,675 (순증)	2,6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관리비 92 <li style="padding-left: 20px;">- 교육비, 책자제작비 등 92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83 <li style="padding-left: 20px;">-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촉진지원 (35,432,360원 × 162개 × 45%) 2,583

-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은 ▶사업참여자 및 상인회의 근무기간 확대 요구,³⁶⁾ ▶골목형상점가 확대 등에 따른 사업수요 증가, ▶자치구의 참여시장 선발권한 이전 요구 등으로 인해 매력일자리가 아닌 별도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2024년 12월 수립된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2025~2027)」에서 중장기 추진과제로 ‘전통시장 매니저 자체 운영방안 수립’이 지정된 바 있음.

36) 매력일자리 사업은 공공근로의 일환으로서 근로기회 확대를 위해 근무기간을 18개월로 제한하고 있음.

- 이에 민생노동국은 2025년 8월 사업방침³⁷⁾을 수립하고 2026년도부터는 매력일자리가 아닌 독자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동 사업을 통해 상인과 행정 사이에서 소통을 매개할 현장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소비트렌드 변화에 적응하고 다양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서울시와 자치구가 추진하는 경영현대화 사업³⁸⁾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촉진지원 사업 개요 >

- 사업기간 : 2026. 1. ~ 12.
- 지원대상 :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내 상인조직, 상인연합회
- 사업내용
 - 경영현대화 전문인력(가칭 '전통시장 코디네이터') 배치 및 운영비 지원
 - ▶ 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기획, 추진, 모니터링 등을 담당할 현장 전문인력 배치
 -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 등 운영비는 시·구·상인회가 공동 부담
 - 직무역량 강화 교육 및 관리체계 마련
 - ▶ 배치된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직무역량(경영, 마케팅, 갈등조정 등) 강화 교육 실시
 - ▶ 서울시는 통합관리지침 수립, 인력운영 현황 모니터링, 우수사례 공유 등 성과 관리 수행
- 추진방법 : 자치구 공모(신청), 보조사업으로 추진
 - 자치구는 관내 상인조직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모 신청
 - 신청된 사업은 서울시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예산을 배정하여 사업을 집행
 - 서울시·자치구·상인회 간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
 - ▶ 서울시 : 총괄기획, 사업비 지원, 성과관리
 - ▶ 자치구 : 현장관리, 사업비 집행, 상인회 협력체계 구축
 - ▶ 상인회 : 인력활용, 현장 실행 주체
- 사업예산 : 총 58억 3,200만원
 - 시비 26억 7천 5백만원, 구비 25억 8천 3백만원, 자부담 5억 7천 4백만원
 - ▶ 시비에는 매칭비(25억 8천 3백만원)와 별도로 교육, 책자제작 등을 위해 서울시가 부담하는 사무관리비 9천 2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 서울시·자치구·상인회 사업비 매칭 부담(서울시 45%, 자치구 45%, 상인회 10%)
 - ▶ 상인회가 자부담이 어려운 경우, 자치구와 협의하여 부담 조정 가능
 - ▶ 서울상인연합회의 경우, 시비 외 비용은 자체 부담이 원칙

< 전통시장 현장인력 인력 운영체계 비교>

구 분	전통시장 매니저(2025)	경영현대화 전문인력(2026)
사업 유형	공공일자리사업	자치구 경상보조사업(자체사업)
운영 규모	약 120명	약 162명
연령 조건	만 40세~64세	만 18세 이상

37) 민생노동국 상권활성화과-9418 (2025. 8. 5.)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와 활력 회복을 위한- '26년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촉진지원 사업(안)”

38) 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의 예시 : 특성화시장, 시장경영패키지, 전통시장 행사 지원, 상거래현대화(온누리상품권 가맹 활성화, 카드 결제 활성화), 전통시장 판로개척 지원,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 등

운 영 기 간	최대 18개월	최대 23개월
사 업 예 산 (재원구조)	46억 9천 4백만원 (시비 100%)	58억 3천 2백만원 (시비 45%, 구비 45%, 민간 10%)
근 거 법 령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 서울시의 방침[2026년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촉진지원 사업(안)]과 사업별설명서의 기재내용을 정리한 것임.

- 다만 동 사업은 사업방침을 통해 서울시와 자치구 그리고 상인회 간 사업비 부담비율을 원칙적으로는 45:45:10으로 정한 것이나, 예외적으로 자부담이 어려운 상인회는 자치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서울시가 자치구와 50:50의 비율로 사업비를 부담할 경우보다 재정적인 부담을 축소(50%→45%)하면서도 자부담과 관련된 민원은 자치구로 전가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동 사업이 상인회에 10%의 자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실제 인력을 활용하는 주체인 상인회의 책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다른 사업들³⁹⁾이 일정 비율 이상의 자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 간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동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1개 상인회가 전문인력을 활용하면서 부담하게 될 자부담 규모는 연간 3백 5십 4만원 수준⁴⁰⁾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자부담 분 면제는 재정여건이 현저히 열악한 상인회에 한정하여 적용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사업명칭 부여시 사업의 명칭만으로도 사업내용을 추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정하고 있고, 목적과 수단 중 수단 부분만을 사업명칭에 포함시키도록 정하고 있음.

39) 주요 전통시장 지원사업의 사업비 부담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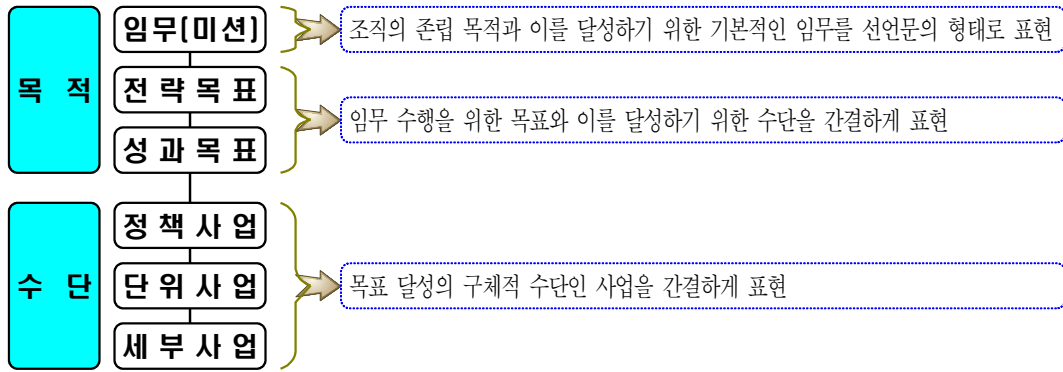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전환사업) : 시비 69~81%, 구비 9~21%, 민간 자부담 10%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주차장 이용보조) : 시비 60%, 지방비 30%(시비 15~18%, 구비 12~15%), 민간 자부담 10%
-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 : 시비 40%, 구비 40%, 민간 자부담 20%
- 시장 경영 지원 : 국비 80% 이내, 지방비 및 자부담 20% 이상

40) 일 단위로 환산하면 하루에 9천 7백원 수준임.

<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른 사업명칭 부여기준 >

□ 일반적 기준

- 자치단체의 정책을 반영한 전략목표·성과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명칭으로서 구체적으로 표현



- 전략목표·성과목표는 목적과 수단을 모두 포함해야 하나, **사업은 수단 부분만을 표시해야 함**
- 추상적 표현을 지양하고 **사업명칭 만으로도 사업 내용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
- 상위 사업은 하위 사업을 포괄할 수 있는 명칭을 부여
- 『△△사업』, 『△△업무』, 『△△실시』, 『△△추진』 등 사업을 중복적으로 표현하는 명칭은 지양
- 동사형 명사로 종결되도록 표현 (예: ~관리, ~건설, ~구축, ~운영, ~정비, ~조성, ~상환, ~지원)

※ 행정안전부,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025. 7), p.77

- 그러나 동 사업은 ▶사업명칭(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촉진지원)만으로는 사업이 추진하려는 구체적인 내용(전문인력의 배치 및 운영비 지원)을 짐작할 수 없고, ▶경영현대화 촉진은 사업의 ‘목적’ 이며 전문인력 배치 및 운영비 지원이 구체적인 ‘수단’ 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행정안전부 기준이 정하고 있는 사업명칭 부여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는 사례라 하겠음.

(8) 서울소셜벤처허브 운영

<사업별설명서 235쪽>

- 동 사업은 사회문제 해결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소셜벤처 전문 보육 허브를 조성하여 기업 간 협력 거점 공간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3천 7백만원(25.7%)이 증가한 16억 4천 8백만원이 편성됨.

< 서울소셜벤처허브 운영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1,310	1,648	3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관리비 707 ■ 민간위탁금 817 ■ 시설비 123

- 서울소셜벤처허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한국장학재단, 공공상생연대기금이 공동으로 조성⁴¹⁾한 소셜벤처 육성 공간으로, 개소 이후 2023년까지 캠코의 기부금을 활용하여 임차료를 납입하였음.

- 그러나 캠코의 기부금이 소진되자 서울시와 캠코는 캠코 역삼사옥으로 공간을 이전하여 무상 사용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역삼사옥의 리모델링 기간(2024년~2025년) 동안 서울시가 임시 임차료를 부담하였고, 2026년부터는 예정대로 역삼사옥으로 이전할 계획임.

- 이와 관련하여 캠코의 역삼사옥은 협약대로 임대료가 면제되나 연간 약 4억 9천 6백만원의 관리비(사무관리비 내 편성)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기존 건물 임대료와 관리비를 합산한 수준에 해당하여 실질적 비용 절감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임.

41) 서울시와 기관 간 협약내용

- ▶ 서울시 : 소셜벤처허브센터 조성·운영
-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공간 제공 및 운영비 지원(5년간 총 6억원)
- ▶ 한국장학재단 : 청년 학자금 대출 이용자 등 고용 취약계층 청년들이 소셜벤처 분야에 진출하도록 창업가 교육, 취·창업 지원 등 지원(5년간 15억원)
- ▶ (재)공공상생연대기금 : 시설 집기 구입비 지원(2019년 1억원)

< 소셜벤처허브 입주공간 변경내역 >

구분	현재공간(2019~2025)	이전공간(2026~2030)
소재지	강남구 선릉로 나라키움 역삼A빌딩	강남구 강남대로 450 (역삼동 814)
소유주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운영공간	2개층 1,408㎡	3개층 1,732㎡
공간구성	입주기업 15개 운영	입주기업 17개 및 공유오피스 24인석 운영
운영비용	연간 임차료 약 3억 7백만원 연간 관리비 약 1억 8천 6백만원	연간 임차료 무상 연간 관리비 약 4억 9천 6백만원

- 소셜벤처허브의 주요 기능은 멘토링·교육·투자 연계 등 프로그램 운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구조는 민간위탁금(8억 1천 7백만원) 대비 공간 유지 비용이 과도하여 운영 목적 대비 예산 비효율성이 우려됨.
- 특히 관리비의 지속적 부담은 ‘무상사용’ 이라는 외형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고비용 구조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공간 규모·배치·운영방식의 적정성 검토, 서울시-캠코 간 비용 분담 구조 조정 등을 통해 공간 운영비를 구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제2장 2026년도 민생노동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 기금 총괄

- 민생노동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운용규모는 전년도 최종계획(4,207억 2천 3백만원)보다 1,066억 7백만원(△25.3%) 감소된 3,141억 1천 6백만원임.

< 2026년도 민생노동국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당초계획(안)	2025년도 최종계획	증감	
			증감액	증감률
계	314,116	420,723	△106,607	△25.3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융 자 계 정	280,941	377,487	△96,546	△25.6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사 회 적 경 제 계 정	33,175	43,236	△10,061	△23.3

- 이 중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의 운용규모는 2,809억 4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3,774억 8천 7백만원)보다 965억 4천 6백만원(△25.6%) 감소된 것임.
-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의 운용규모는 331억 7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432억 3천 6백만원)보다 100억 6천 1백만원(△23.3%) 감소된 것임.
- 2026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698억 2천 4백만원으로, 이는 전년도말 조성액(1,373억 3천 2백만원)보다 675억 8백만원(△49.2%)이 감소된 것임.

< 2026년도 중 민생노동국 소관 기금 조성계획(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말 조성액(A)	2026년도 중 조성계획			2026년도 말 조성액(A+B)
		수입	지출	증감(B)	
계	137,332	216,784	284,292	△67,508	69,824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용 자 계 정	76,258	204,683	276,219	△71,536	4,722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사 회 적 경 제 계 정	61,074	12,101	8,073	4,028	65,102

※ 조성계획은 수입에서 '예치금 회수'와 '예탁금 원금회수', 지출에서 '예치금'과 '예탁금'이 제외된 것임.

- 이 중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의 2026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말(762억 5천 7백만원)보다 715억 3천 6백만원(△93.8%)이 감소된 47억 2천 2백만원임.
-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의 2026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말(610억 7천 4백만원)보다 40억 2천 8백만원 증가된 651억 2백만원임.

II.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1. 기금 조성 현황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용자지원을 통한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965년에 설치되었으며, 2018년부터 용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분리·운용하고, 2023년에는 사회투자기금을 승계하여 사회적경제계정을 신설함.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계정 구분 >

계 정 명	용 도 ^{주1)}	소 관 부 서
용 자 계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관련단체 등에 대한 융자 · 금융기관의 저금리융자에 대한 이차차액 보전 · 기금 차입금·예수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비 및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특별신용보증지원으로 발생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결산상 기본재산 손실금에 대한 보전 	민 생 노 동 국 소 상 공 인 정 책 과
투 자 계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 	경 제 실 창 업 정 책 과
사회적경제계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 사회, 환경 및 문화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투자 사업에 대한 지원 	민 생 노 동 국 공 정 경 제 과

※ 주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에 따른 것임.

- 이 중 용자계정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42)에 따라 ▶서울시로부터의 전입금,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등으로 ‘수입’ 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융자, 금융기관의 저금리융자에 대한 이차차액 보전, 특별신용보증지원으로 발생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결산상 기본재산 손실금에 대한 보전 등의 용도로 ‘지출’ 됨.

- 용자계정은 2026년도 중 2,046억 8천 3백만원을 수입하고 2,762억 1천 9백만원을 지출하여 2026년도말에는 전년도말(762억 5천 8백만원)보다 715억

42)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용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
3.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된 융자금 회수
4. 보조금·차입금·예수금 및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용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관련단체 등에 대한 융자
2. 금융기관의 저금리융자에 대한 이차차액 보전
3. 기금 차입금·예수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4.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비 및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5. 특별신용보증지원으로 발생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결산상 기본재산 손실금에 대한 보전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천 6백만원 감소된 47억 2천 2백만원을 조성할 계획임.

< 2026년도 중 용자계정 조성계획(안) >

(단위 : 백만원)

2025년도 말 조성액(A)	2025년 조성계획			2026년도 말 조성액(A+B)
	수입	지출	증감(B)	
76,258	204,683	276,219	△71,536	4,722

※ 조성계획은 수입에서 '예치금 회수'와 '예탁금 원금회수', 지출에서 '예치금'과 '예탁금'이 제외된 것임.

- 용자계정의 2026년도말 기준 총 조성규모⁴³⁾는 조성액(47억 2천 2백만원)에서 용자금 미회수채권 5,230억 1천 3백만원을 합산한 5,277억 3천 5백만원임.

< 2026년도말 기준 용자계정 총 조성규모(안) >

(단위 : 백만원)

2025년도 말 조성액	용자금 미회수채권	총 조성규모
4,722	523,013	527,735

- 한편 2025년 10월말 기준 용자계정의 총액⁴⁴⁾은 6,605억 3천 6백만원으로, 기금은 용만으로는 5,678억 9천 9백만원의 손실이 발생되어 일반회계 전입금(1조 84억 3천 5백만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2,200억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임.

< 용자계정 총액의 구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 2025.10월말 기준)

기금 총액	일반회계 전입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기금 운용수익
660,536	1,008,435	220,000	△567,899

43)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는 기금 총 조성규모는 조성액에서 회수되지 않은 용자금 채권을 합산하고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한 후 상환하지 않은 원금을 차감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음(총 조성규모 = 조성액 + 용자금 미회수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단, 서울시의 경우에는 기금 활용도가 낮다는 점을 이유로 2021년 5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개발기금을 폐지하였음.

44) 용자계정의 총액 = 일반회계 전입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 기금 운용손실

2. 수입·지출계획안

- 2026년도 용자계정의 운용규모는 2,809억 4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3,774억 8천 7백만원)보다 965억 4천 6백만원(△25.6%)이 감소된 것임.

가. 수입계획안

- 수입계획은 2,809억 4천 1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00억원, ▶ 용자금 회수(이자포함) 1,826억 6천 2백만원, ▶ 예치금 회수 762억 5천 8백만원, ▶ 이자수입 20억 2천 1백만원임.

< 2026년도 용자계정 수입계획(안) >

(단위 : 백만원, %)

항 목	2026년도 당초계획(안)	2025년 최종계획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80,941	377,487	△96,546	△25.6
전 입 금	20,000	50,700	△30,700	△60.6
용자금회수(이자포함)	182,662	164,750	17,912	10.9
예 치 금 회 수	76,258	158,248	△81,990	△51.8
이 자 수 입	2,021	3,789	△1,768	△46.7

나. 지출계획안

- 지출계획은 2,809억 4천 1백만원으로 ▶ 비용자성사업비 939억 4백만원, ▶ 용자성사업비 1,800억원, ▶ 기본경비 5백만원, ▶ 예치금 47억 2천 2백만원, ▶ 예수금 원리금 상환 23억 1천만원임.

< 2026년도 용자계정 지출계획(안) >

(단위 : 백만원, %)

항 목	2026년도 당초계획(안)	2025년 최종계획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80,941	377,487	△96,546	△25.6
비 용 자 성 사 업 비	93,904	88,804	5,000	5.7
용 자 성 사 업 비	180,000	200,000	△20,000	△10.0
기 본 경 비	5	5	-	-
예 치 금	4,722	76,258	△71,536	△93.8
예 수 금 원 리 금 상 환	2,310	12,420	△10,110	△81.4

- 그동안 용자계정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총 2,400억원을 예수받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납부해 오다가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는 매년 원금 100억원과 이자를 포함하여 상환하고 있으나, 2026년도에는 기금 재원 부족으로 원금 상환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자 상환액 23억 1천만원만 지출계획에 포함시킨 것임.

< 최근 5년간 예수금원리금 상환을 위한 지출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합 계	2,640	12,640	12,537	12,420	2,310
원금상환	-	10,000	10,000	10,000 ^{주1)}	-
이자 ⁴⁵⁾ 상환	2,640	2,640	2,537	2,420	2,310

※ 주1) 2025년 12월초 상환예정임.

4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탁 약정에 따라 1.1% 이율을 적용함.

3. 검토의견

- 먼저 용자계정 총액의 구성내역을 최근 3년간 10월말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운용손실이 발생되고 있고, 특히 2025년에는 운용손실의 규모가 더욱 확대되어 다른 회계(일반회계) 및 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예수금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

< 최근 3년간 용자계정 총액의 구성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금 총액	일반회계 전입금 (총액 중 구성비)	통합재정안정화기 금 예수금 (총액 중 구성비)	기금 운용수익 (총액 중 구성비)
2023년 10월말	663,752	968,435 (145.9)	240,000 (36.2)	△544,683 (△82.1)
2024년 10월말	676,859	968,435 (143.1)	230,000 (34.0)	△521,576 (△77.1)
2025년 10월말	660,536	1,008,435 (152.7)	220,000 (33.3)	△567,899 (△86.0)

- 그리고 2026년도 용자계정의 지출계획(2,809억 4천 1백만원) 중 재무활동⁴⁶⁾과 행정운영경비⁴⁷⁾를 제외한 정책사업비 규모는 총 2,739억 4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9억원 감소됨.
- 정책사업비(총 2,739억 4백만원)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직접용자를 위한 민간융자금 1,800억원과 ▶시중은행협력자금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 923억원, ▶자금통합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2억 5천 4백만원)과 기금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13억 5천만원)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6억 4백만원임.

46) 2026년도 지출계획(안) 중 재무활동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대한 예수금 이자상환 23억 1천만원과 ▶예치금 47억 2천 2백만원을 포함한 70억 3천 2백만원임.

47) 2026년도 지출계획(안) 중 행정운영경비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 위원 수당 5백만원임.

< 2026년도 융자계정 사업별 지출계획(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당초계획(안)	2025년도 최종계획	증감액	증감률
정책사업비 합계	273,904	288,804	△14,900	△5.2
융자성 사업비	180,000	200,000	△20,000	△10.0
중소기업 직접융자 (민간융자금)	180,000	200,000	△20,000	△10.0
비용자성 사업비	93,904	88,804	5,100	5.7
시중은행협력자금 지원 (이차보전금)	92,300	86,900	5,400	6.2
자금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54	302	△48	△16.0
기금 업무대행 수수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350	1,602	△252	△15.7

- 융자성 사업비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1호⁴⁸⁾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시설자금·성장기반자금 등을 고정금리로 직접 융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00억원(△10.0%) 감소된 1,800억원을 지출할 계획임.

- 비용자성 사업비는 시중은행협력자금 지원, 자금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경비, 기금 업무대행 수수료로 구성되며, 이 중 시중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낮은 금리(변동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이차보전금⁴⁹⁾을 지원하는 것임.

48)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융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관련단체 등에 대한 융자

49) 시중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시중은행자금을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저리로 융자하기 위한 정책자금으로 활용하고 서울시가 1.8~2.5%의 이차 차액을 보전함.

- 2026년도의 경우 직접용자를 위한 지출계획이 전년도(2,000억원)보다 200억원 감소된 것과는 반대로, 서울시가 이차차액을 보전하는 시중은행협력자금 지원은 전년도(869억원)보다 54억원 증가된 923억원으로 계획한바, 이는 기금의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직접용자가 감소되는 상황에서도 전년도와 유사한 규모의 용자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

< 최근 3년간 중소기업육성자금 용자지원 계획 및 실적^{주1)} >

(단위 : 억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10월	2026년(안)
합 계	계 획	16,000	18,650	24,200	24,000
	실 적	16,835	19,065	23,124	-
중소기업육성기금 직접용자 ^{주2)}	계 획	2,000	2,150	2,000	1,800
	실 적	1,791	1,718	1,858	-
시중은행협력자금 지원 ^{주3)}	계 획	14,000	16,500	18,200	20,200
	실 적	15,044	17,347	17,211	-
안심통장 ^{주4)}	계 획	-	-	4,000	2,000
	실 적	-	-	4,055	-

※ 주1) 실적은 용자 추천액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용자계획의 120%까지 용자 추천이 가능함.

주2) 서울시가 용자금 전액을 부담하는 직접 용자임.

주3) 용자금은 금융기관이 부담하되, 서울시는 이차차액을 지원하는 간접용자임.

주4) 용자금은 민간자금으로 부담하되,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액의 85%를 보증하는 특별보증임.

- 즉 용자계정이 매년 지속되고 있는 운용손실로 인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계획 중 전입금이 전년도(507억원)보다 307억원(△60.6%) 감소되자 동일 규모의 용자를 지원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서울시의 재정부담이 적은 시중은행협력자금 지원을 확대한 사안임.
- 다만 시중은행협력자금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은 직접용자를 위한 용자금과는 달리 원금 회수가 없는 소멸성 지출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원을 고갈시키는 문제가 있으므로, 재정여건에 대한 임시적 대응방편으로 이차보전금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반복하기보다는 전입금 확대 등 기금재원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최근 3년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및 실적^{주1)} >

(단위 : 건, 억원, % / 2025.10월말 기준)

구 분	계 획 (A)	융자추천			융자(대출)실행		
		건수	추천금액 (B)	추천율 (B/A)	건수	실행금액 (C)	실행률 (C/A)
합 계	24,200	87,989	23,124	95.6	85,991	22,312	92.2
중소기업육성자금	2,000	4,926	1,858	92.9	4,777	1,776	88.8
시설자금	120	14	90	75.4	11	63	52.9
성장기반자금	880	1,705	819	93.0	1,653	790	89.7
긴급자영업자금	850	3,089	850	100.0	3,000	827	97.3
혁신형기업도약자금	50	78	50	100.0	78	50	100.0
재해중소기업자금	100	40	49	48.8	35	46	45.9
시중은행협력자금(경영안정자금)	18,200	42,507	17,211	94.6	40,658	16,481	90.6
경제활성화자금	10,200	20,985	9,399	92.1	20,022	8,977	88.0
포용금융자금	200	955	199	99.4	898	188	93.9
창업기업자금	1,000	4,066	974	97.4	3,882	937	93.7
신속드림자금	700	2,654	609	87.0	2,615	599	85.6
비상경제회복자금	1,000	2,732	996	99.6	2,640	964	96.4
수출기업 경영안정자금	100	44	42	42.3	36	29	28.9
서울배달상생자금	200	346	197	98.6	317	180	89.8
희망동행자금	2,300	7,015	2,295	99.8	6,674	2,164	94.1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2,250	2,906	2,247	99.9	2,858	2,215	98.4
ESG자금	100	257	99	98.9	251	97	97.4
재기지원자금	150	547	154	102.3	465	131	87.3
안심통장	4,000	40,556	4,055	101.4	40,556	4,055	101.4
안심통장 1호	2,000	20,155	2,015	100.8	20,155	2,015	100.8
안심통장 2호	2,000	20,401	2,040	102.0	20,401	2,040	102.0

III. 중소기업육성자금 사회적경제계정

1. 기금 조성 현황

- 중소기업육성자금 사회적경제계정은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투자 사업 등에 대한 투·융자 지원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전신인 사회투자기금(이하 “사투기금”)을 승계하여 2023년에 신설됨.
- 2012년부터 조성·운영된 사투기금은 당초 민간위탁을 통해 운용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2015.7.24.)으로 위탁이 금지⁵⁰⁾됨에 따라 2017년부터는 서울시가 수행기관을 통해 운용하였음.

- 그러나 수행기관을 통한 운용과정에서 전문성 부족 및 도덕적 해이 등의⁵¹⁾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수행기관 공모요건에 ‘보증보험 가입’을 추가했으나, 수행기관들이 공모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용자사업이 중단됨⁵²⁾.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방식을 변경하면서 사회적경제계정을 신설한 것임.
- 한편 사회적경제계정은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금 회수,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조성됨.
- 사회적경제계정의 2026년도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40억 2천 8백만원(6.6%)이 증가한 651억 2백만원임.

< 2026년도 사회적경제계정 조성계획 >

(단위 : 백만원)

2025년도 말 조성액(A)	2026년 조성계획			2026년도 말 조성액(A+B)
	수입	지출	증감(B)	
61,074	12,101	8,073	4,028	65,102

※ 조성계획은 수입에서 ‘예치금 회수’와 ‘예탁금 원금회수’, 지출에서 ‘예치금’과 ‘예탁금’이 제외된 것임.

5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2021년 재개정되어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51) 서울시 특정감사(2022)에서 ▶이해관계 업체 및 회원사 대상 채용자,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제척·회피 의무 소홀, ▶중복 용자 및 기업당 연간 용자한도 초과, ▶용자 수행기관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됨

52) 보증보험 가입 10억원을 5년간 용자시 수행기관이 지급해야 하는 보증료는 6천만원으로, 수행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에 채용자하여 얻는 이자수입(연간 약 2%)에 비해 과다하여 공모에 참가할 수 없었다는 기관이 다수임.

- 또한 2026년도 총 조성규모는 2026년도말 조성액 651억 2백만원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261억 5천 1백만원을 합한 912억 5천 3백만원임.

< 2026년도 사회적경제계정 총 조성규모 >

(단위 : 백만원)

2026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 채권	총 조성규모
65,102	26,151	91,253

- 2025년 10월말 기준 사회적경제계정의 미회수 채권잔액은 전년대비 48억 8천 9백만원이 감소한 267억 1천 6백만원으로, 최근 당해연도 원금상환이 신규 융자 규모를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채권잔액이 감소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사회적경제계정 채권 잔액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10월
채권잔액(C+A-B)	38,199	31,605	26,716
당해연도 융자금(A)	1,790	3,454	5,350
당해연도 원금상환액(B)	12,299	10,048	10,239
전년도 채권이월액(C)	48,708	38,199	31,605

2. 수입·지출계획안

- 2026년도 사회적경제계정의 수입·지출규모는 전년대비 100억 6천 1백만원 (△23.3%)이 감소한 331억 7천 5백만원임.

가. 수입계획안

- 사회적경제계정의 2026년도 수입계획은 ▶용자금 회수 수입(이자포함) 86억 4천 9백만원, ▶예치금 회수 210억 7천 4백만원, ▶이자수입 25억 7천 3백만원, ▶기타수입 8억 7천 9백만원으로 구성됨.

< 2026년도 사회적경제계정 수입 계획안 >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항 목	2025년	2026년	증 감	비고
합 계	43,236	33,175	△10,061	
전 입 금	-	-	-	
용 자 금 회 수 (이 자 포 함)	10,996	8,649	△2,347	- 용자금 잔액 감소로 용자금 회수 감액
예 치 금 회 수	29,877	21,074	△8,803	- '25년 사업비 증가에 따라 예치금회수 감액
이 자 수 입	2,363	2,573	210	-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 수입 증가로 증액
기 타 수 입	-	879	879	- 임팩트펀드(1호) 운용기관 종료에 따른 출자금 회수액 신규 편성

- 사회적경제계정은 그동안 수행기관 부재(2022년) 및 운용방식 변경에 따른 행정 절차 지연(2023년) 등으로 인해 용자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기금 조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편성되지 않고 있음.

< 사회적경제계정 서울시 전입금 추이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안)
연도말 조성액	39,275	50,693	59,877	61,074	65,102
서울시 일반회계 전입금	0	0	0	0	0
공정경제과	0	0	0	0	0

나. 지출계획안

- 사회적경제계정의 2026년도 지출계획은 ▶비용자성사업비 6천 3백만원, ▶용자성사업비 80억원, ▶기본경비 1천만원, ▶예치금 251억 2백만원으로 구성됨.

< 2026년도 사회적경제계정 지출 계획안 >

(단위 : 백만원)

지 출 계 획				
항 목	2026년	2025년	증 감	비고
합 계	33,175	43,236	△10,061	
비용자성사업비	63	6,152	△6,089	- 임팩트 약자동행 펀드 조성 및 출자 완료에 따라 출자금 미편성 - 코로나19 특별용자 상환만기일 도래로 이차보전금 지원대상 감소함에 따라 감액 편성 등
용자성사업비	8,000	6,000	2,000	- 용자 수요 증가로 증액
기 본 경 비	10	10	-	- 기금심의회 운영 등을 위한 경비로 '25년 편성액 수준 유지
예 탁 금	-	10,000	△10,000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미예탁에 따른 미편성
예 치 금	25,102	21,074	4,028	- 임팩트 약자동행 펀드 조성 완료에 따른 출자금 미편성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미예탁으로 인해 예치금 증액 편성

- 2026년에는 용자사업 규모가 확대되었음에도 약자동행 펀드 출자가 완료되면서 비용자성 사업비가 감소하고, 전체 기금 운용 규모 중 재무활동(예치금)이 75.7%(251억 2백만원)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소극적 운용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3. 검토의견

- 사회적경제계정은 사회적경제기업에 융자하는 ‘융자성 사업비’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자사업과 코로나19 피해기업에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비용자성 사업비’로 구성됨.

< 2026년 사회적경제계정 사업비 편성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년(안)	2025년	증감
사업비 합계	8,063	12,152	△4,089
융자성 사업비	8,000	6,000	2,000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8,000	6,000	2,000
비용자성사업비	63	6,152	△6,089
사회적경제기업 투자	-	6,000	△6,000
이차보전금 지원	39	130	△91
기금업무 대행 수수료	9	7	2
채권 및 기타관리비	15	15	-

가. 융자성 사업

- 사회적경제계정의 융자사업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대행하여 실시하는 방식으로, 2026년에는 융자 한도(4억원)와 대출금리(1.75%)를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전년 대비 20억원을 증액한 80억원이 편성됨.
- 사투기금 당시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하던 융자사업의 지원 범위는 사회적경제계정으로 전환되면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한정됨에 따라 2023년부터는 정책대상 범위가 과거보다 축소되었음.

- 그러나 지원대상이 축소된 이후 용자실적은 2023년 17억 9천만원(29건), 2024년 33억 5천 4백만원(40건), 2025년 10월 기준 53억 5천만원(62건)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어 중소기업 범위 내 사회적 경제기업의 용자 수요 증가가 확인됨.

< 사회적경제계정 용자사업 연도별 실적 >

(2025. 10. 31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용자 금 액	합계	21,123	9,348	15,954	21,331	13,356	18,171	21,757	27,512	19,200	-	1,790	3,454	5,350
	市기금	10,900	7,488	14,612	20,664	9,884	13,066	16,350	22,020	16,000	-	1,790	3,454	5,350
	민간기금	10,223	1,860	1,342	667	3,472	5,105	5,407	5,492	3,200	-	-	-	-
지원건수	72	44	81	65	170	137	127	594	243	-	29	40	62	

- 이러한 수요 증가 흐름에 따라 2026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20억원이 증액된 8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대출금리 및 용자한도 등 용자조건이 2025년과 동일 수준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단순한 예산 확대만으로 지출 증가가 보장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예산 확대가 실질적 용자 실적으로 이어지도록 홍보 강화, 신청 접근성 개선, 대상기업 발굴 등 별도의 활성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나. 비용자성 사업

- 사회적 경제계정의 비용자성 사업비는 코로나19 피해기업 이차보전금 지원 3천 9백만원과 기금 업무대행수수료 9백만원, 채권 및 기타관리비 1천 5백만원으로 구성됨.

- 먼저 코로나19 피해기업 이차보전금 지원은 수행기관 6개소⁵³⁾를 통하여 2020년~2021년에 추진된 코로나19 특별융자에 대한 이차차액(1.5%~2.5%)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출잔액이 줄어들면서 이차보전액이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9천 1백만원이 감액됨.
- 이차보전금 지원은 신규 지원을 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진행된 특별융자에 대한 관리적 성격으로 약정 상환기간(2년 거치 4년 상환)인 2027년까지 지원될 예정임.

< 코로나19 피해기업 이차보전금 지출 실적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상반기
이차보전금 (건수)	331 (293건)	326 (286건)	222 (227건)	135 (180건)	41 (125건)

- 한편 사회적경제계정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출자를 모두 완료하여 2026년에는 해당 사업 관련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으나, 투자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출자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개요 >

(2025. 10. 31.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조성년도)	조성액	市출자액	市출자금 잔액	총 출자자	서울소재 기업		市 투자평가액	수익률	존속기간
					투자기업	투자액			
계	105,500	9,000	8,855	30개	29개	25,400	9,717	-	-
1호('18년)	14,500	1,000	878	7개	8개	6,400	1,324	132.40%	8년(~'26년)
2호('19년)	15,000	1,000	1,000	5개	6개	5,400	1,100	110.01%	8년(~'27년)
3호('20년)	30,000	1,000	977	8개	12개	12,400	1,293	129.25%	8년(~'28년)
4호('25년)	6,000	4,000	4,000	2개	3개	1,200	4,000	100.00%	8년(~'33년)
5호('25년)	40,000	2,000	2,000	8개	-	-	2,000	100.00%	8년(~'33년)

53) 나눔과미래, 밴드, 신나는조합, 한국사회혁신금융, 동작신탁, 신목신탁

- 그리고 2026년에는 1호 투자조합의 운용이 종료되면서 회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회수금을 예산에 적절히 반영하고 원금 회수율, 배당규모 등 재무성과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출자 당시 설정된 정책목표에 비추어 기업의 매출 성장, 고용 창출, 사회적 가치 달성 등 실질적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출자사업의 규모·대상·평가의 근거로 삼아야 할 것임.

IV.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의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1.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조성 개요

-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이하 “더성장 펀드”)는 생활문화 분야에서 혁신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에게 투자하기 위한 펀드로, 서울시가 출자하는 30억원을 포함하여 총 131억 1천만원 규모로 조성하려는 것임.

<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조성 개요 및 운영계획 >

- 펀드 조성 개요
 - 펀드명 :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 출자대상 :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 조성규모 : 131.1억원 (서울시 30억원, 중소벤처기업부 60억원, 기타 민간자금 41.1억원)
 - 자금구성 : 서울시 출자금 + 정부 자금 + 운용사(GP) + 기타 민간자금
- 펀드 운용 계획
 - 운용기간 : 8년 (투자 4년 + 회수 4년, 2025~2032년)
 - ※ 연도별 투자계획 : 2025년 7억원, 2026년 7억원, 2027년 8억원, 2028년 8억원
 - 투자대상 : 생활문화 분야에 혁신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기업가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 투자방법 : 주식인수[보통주, 상환(전환)우선주,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지분인수(프로젝트 투자)
 - 회수방안 : 기업공개(IPO), M&A, 세컨더리거래 등

- 서울시는 ▶2025년도 7억원, ▶2026년도 7억원, ▶2027년도 8억원, ▶2028년도 8억원을 포함하여 4년간 총 30억원을 더성장 펀드 조성을 위해 출자하고 2029년도부터 2032년까지 4년간 회수할 계획임.
- 그리고 매년 출자는 ▶출자에 대한 의회의 사전동의, ▶민생노동국(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일반회계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사업에 출자를 위한 기금전출금을 편성하여 경제실(창업정책과) 소관 투자계정⁵⁴)으로 전출, ▶경제실 소관 투자계정에서 해당 재원을 전입받아 출자하는 방식으로 추진됨.
- 이와 관련하여 2025년도 출자분(7억원)에 대해서는 2025년 5월 ▶민생노동국이 출자 동의안⁵⁵)을 제출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 제1회 추경예산⁵⁶)을 통해 기금전출금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제실은 민생노동국으로부터 전출받는 재원(7억원)을 투자계정의 수입계획에는 전입금, 지출계획에는 출자금으로 반영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⁵⁷)을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바 있음.
- 그리고 지난 10월 31일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에는 민생노동국이 2026년도 출자분(7억원)에 대해 지난 8월 별도의 출자 동의안⁵⁸)을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2025. 9. 12.)을 얻은 후 편성·수립된

54) 기금의 용도를 고려하여 투자계정에서 출자하는 것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② 투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

55)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의안번호: 11-02839, 제출일: 2025. 5. 26., 본회의 가결: 2025. 6. 27.)

56) 「서울특별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11-02697, 제출일: 2025. 5. 26., 본회의 가결: 2025. 6. 27.)

57) 「2025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11-02846, 제출일: 2025. 5. 26., 본회의 가결: 2025. 6. 27.)

58)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의안번호: 11-03060, 제출일: 2025. 8. 11., 본회의 가결: 2025. 9. 12.)

것으로, 예산안에는 민생노동국의 기금전출금 7억원을, 기금운용계획안 중 투자계정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는 전입금과 출자금을 각각 7억원 씩 반영한 것임.

<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조성 관련 2026년도 예산안 편성내역 >

(단위 : 백만원)

소관 실·본부·국명 (소관 부서명)	회계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내역	예산액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	일반회계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	기금 전출금	합 계	20,700
				투자계정 전출금	20,000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출자를 위한 투자계정 전출금	700

<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조성 관련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내역 >

(단위 : 백만원)

소관 실·본부·국명 (소관 부서명)	기금명 (계정명)	수입계획			지출계획		
		과목	내역	수입계 획액	세부사업명	과목	지출 계획액
경제실 창업정책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투자계정)	기타회계 전입금	합 계	41,550	소상공인 더 성장 펀드 조성	출자금	700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출자를 위한 전입금	700			
			그 밖의 전입금	40,850			

2. 검토의견

- 더성장 펀드는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유망 소상공인에게 선 제적으로 투자하여 자생력을 제고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견인하려는 것으로, 지난 2025년 9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⁵⁹⁾에 따라 의회의 사전의

59)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결(2025. 9. 12.)을 얻어 출자를 위한 법정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안임.

- 아울러 지난 2025년 6월 2025년도분 출자금을 반영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당시에는 펀드 결성규모가 50억원⁶⁰⁾(서울시 30억원, 민간 20억원)에 불과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나,⁶¹⁾ 2026년도분 출자금을 편성한 투자계정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현시점에는 결성규모가 131억 1천만원⁶²⁾으로 확대되어 의회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도 상당 부분 해소된 사안임.

- 다만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조성은 내용상으로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⁶³⁾에 따라 민생노동국에 분장된 ‘소상공인 지원’ 업무와 관련되어 있으나, 실제 펀드 출자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경제실 소관 투자계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② **투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운용 담당정책관

2. 분임기금운용관

가. 융자계정 : 소상공인정책과장

나. **투자계정 : 창업정책과장**

다. 사회적경제계정 : 공정경제과장

60)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61) 서울시 30억원, 민간 20억원 포함.

62) 서울시 30억원, 중소벤처기업부 60억원, 민간 41억 1천만원 포함.

63)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2조의3(민생노동국) 민생노동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상공인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제18조(회계관직 지정 등)

-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단서 생략)
2. 기금운용관 : 해당 기금 담당 실·본부·국장
3. 분임기금운용관 : 해당 기금 담당 과장

- 이와 같이 업무의 성격과 소관부서의 이원화는 부서 간 업무의 혼선으로 인해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비효율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기금을 소관하는 경제실로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입법조사관	연락처
강 민 수	02-2180-8062
김 혜 진	02-2180-8057